

옥외광고 법령 해설집

해설집 작성기준

법 른	2016. 1. 6. 기준
시 행 령	2016. 7. 7. 기준
표준조례	2016. 9. 12. 기준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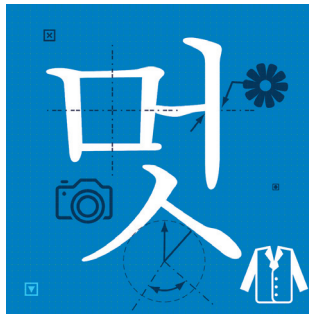
꽃집



게스트하우스



사진관



인테리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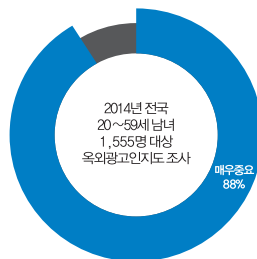
한복집

어울림이

이다

큰글자, 화려한색깔의간판보다
거리와 어울릴 때 비로소 멋있는간판이 된다

87.5%가 간판 개선 후 거리가
쾌적하고 아름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간판개선사업사업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간판개선 사업 컨설팅 및 디자인 지원/ 우수 간판 선정 및
홍보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들어가면서

옥외광고 법령 해설집은

2016년 1월 6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 자치단체 공무원 등 관련 독자들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해설집에 포함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7.7.)」,
시·도 및 시·군·구 조례 표준안(2016.9.12.)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례 표준안의 경우 참고사항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별도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집의 구성으로 Section1인 옥외광고 법령 해설에서는

옥외광고 법령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법규를 정리하고 해당 내용의 사진과 그림을 첨부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Section2인 민원사례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옥외광고물 설치 및 허가 등 관련 행정 민원실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자치단체에 문의가 많은 옥외광고 법령 관련 질의 및 회신을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연도 별로 내용을 배치하여 옥외광고 업무 및 관련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해설집을 통해 옥외광고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산업계의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인들이 옥외광고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Section 01

옥외광고 법령 해설

제1장 총 칙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목적	12
2. 정의.....	12
가. 옥외광고물	12
나. 게시시설	13
다. 옥외광고사업	13
라. 기타 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	13
3. 옥외광고물의 분류	16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1

제2장 허가 및 신고

1.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22
가. 허가대상 광고물	22
나. 신고대상 광고물	23
2. 허가·신고없이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24
3.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24
4. 허가·신고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25
가. 허가·신고대상 지역·장소	25
나. 허가·신고대상 물건	25
5. 허가·신고절차	26
가. 허가처리 및 신고수리기관	26

나. 허가처리 절차	27
다. 신고수리 절차	28
6.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29
7.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30
가. 변경허가의 절차	30
나. 변경신고의 절차	31
다. 광고물 관리자의 변경	32
8.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32
9.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등 수수료	33
10. 광고물 실명제	33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34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7
가. 일반적인 표시방법	37
나.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	37
다.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	38
라.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39
마. 광고물등에 전기 공급 또는 사용제한	39
3.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40
가.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40
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45
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51
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52
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53
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	55
사.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6

contents

4.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56
가.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56
나.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59
다.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61
라. 입간판의 표시방법	61
마. 현수막의 표시방법	62
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65
사. 벽보의 표시방법	67
아. 전단의 표시방법	68
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68
차.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69

제4장 표시방법 완화

1. 표시방법 완화	70
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 기능지역(특정구역 지정)	70
나. 표시방법 완화 지정절차와 내용	70
2.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72
가.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한하는 특례 지역	72
나. 국민생활 등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완화 특례	72
3.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73
가. 대상 건물 및 제출자(일정 규모이상 건물)	73
나.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73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1.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74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74
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	74
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75
다. 광고물등의 유형에 따라 표시가 금지되는 건물	76
라. 금지지역·장소·물건에도 예외적으로 표시가능 광고물등	76

3. 금지광고물등	77
가. 안전저해, 사행산업 등의 광고물	77
나. 광고내용에 대한 금지	77
4. 표시방법 강화	78
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강화 가능지역(특정구역 지정)	78
나. 표시방법 강화 지정절차와 내용	78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운영 등	82
가.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	82
나.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결정	82
다. 자율관리협정 효력 및 변경 등	83
2.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등	83
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대상 지역	83
나.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등	84
3. 주민협의회 운영	84
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84
가. 자유표시구역 지정 대상 지역	85
나. 자유표시구역 지정 절차 등	85
다.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86
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변경 등	87
마.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운영 지원	87
5.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87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1.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88
가.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제한	88
나.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88

contents

2. 적용배제	90
가. 적용배제 이유	90
나.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표시기간 30일 이내)	90
다.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표시기간 30일 초과)	91
3. 한국옥외광고센터	92
가. 센터의 설립목적	92
나. 센터의 임직원 채용 및 파견요청	92
다. 센터의 사업	92
라. 센터의 운영 및 기타사항	93
4.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93
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93
나.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변경설치 및 표시기간 연장 등	94
다. 지원대상 주요 국제행사	94
라. 신소재, 신기술 등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94
마. 옥외광고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95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95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96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	96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96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97
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97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98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98
나.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99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	100
2.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설치	100
가. 정책위원회의 구성	100
나. 정책위원회 심의사항	101
다. 정책위원회 운영	101

마.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해임 및 해촉	101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101

제9장 안전점검

1.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102
2. 안전점검의 기준 · 시기 및 방법 등	103
가. 안전점검의 시기	103
나. 안전점검의 신청	103
3.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104
가.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대상자	104
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등	104
다. 안전점검 업무 위탁받은 자의 지위 및 책임	104
4. 풍수해 등을 대비한 안전점검 등	105
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기	105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05
다. 기타	105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1. 위반에 대한 조치	106
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	106
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자(광고물등의 관리자등)	106
다. 조치방법	106
라.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107
마. 전화번호외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인적사항 요청	107
바. 기타 광고내용 등 심의요청	108
2.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	108
가. 합동점검	108
나. 합동계획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등	108
다. 점검결과 및 조치	109

contents

3. 행정대집행의 특례	109
가. 행정대집행의 특례	109
나.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109
다. 제거한 광고물등의 반환 등	110
라. 미반환 광고물 등의 귀속	110
4. 이행강제금	110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광고물등	110
나. 이행강제금의 최고액	111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계고 등	111
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등	111
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111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11
사. 이행강제금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	114
5. 허가취소 등	114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요건	114
나. 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114
다.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조치 시정명령	114
6.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114
가. 등록취소대상	114
나. 등록취소 처분대상 행위	115
다.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	115
라. 영업정지등 처분 내용통보	115
마. 관할구역 외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115
바. 등록취소전 조치사항	116
7. 청 문	116
8. 벌 칙	116
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116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117
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117

9. 양벌규정	117
10. 과태료	118
가. 과태료	118
나. 과태료 부과대상	118
다. 과태료 부과기준	118
라. 과태료 부과 · 징수	118
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118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1.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120
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120
나. 옥외광고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	120
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결격사유	121
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시 제출서류	121
마. 옥외광고사업 등록시 검토사항	121
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발급 및 게시	121
사.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121
아.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22
자. 옥외광고사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122
차. 옥외광고사업 영업장소 출입 검사	122
2.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122
가. 단체의 설립 목적 · 업무 및 회원	122
나. 단체의 정관기재 사항	123
다. 정관의 변경	123
3.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124
가. 교육의 목적	124
나. 교육의 종류 등	124
다. 교육의 실시	124
라. 교육의 위탁	124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125

contents

제12장 기 타

1. 수수료 징수	126
가. 수수료의 종류	126
나. 수수료 내역	126
2. 적용상 주의	126
3. 주요 부칙	127
가. 옥외광고업에 대한 경과조치	127
나. 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127
다.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127
라.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127
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27
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27
사.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128
아.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128
자. 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128
차.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28

Section 02

민원사례

제1장 총 칙	130
제2장 허가 및 신고	131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36
제4장 표시방법 완화	147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149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57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158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161
제9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162
제10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166

01

s e c t i o n



옥외광고 법령 해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기타 법규를 정리하고 관련 사진 및 그림,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 일반인들의 법령 숙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허가 및 신고
제 3 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 4 장	표시방법 완화
제 5 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 6 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 7 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 8 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 9 장	안전점검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제12장	기 타

제1장 총 칙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목적 (법 제1조·영 제1조)

-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방법, 표시지역·장소와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목적을 지님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영의 목적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법 제2조)

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교통시설·교통수단 포함)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교통시설 :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
 - 교통수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적용상 주의〉

-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뜻이므로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운동장 내부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정의에서 제외
- 예) - 밖에서 보이지 않고 통제하는 운동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내부 제외
 -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경비실 등에서 통제하는 아파트 단지 내 제외
 - 건물 등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 등의 시설내부 제외 등
- ⇒ 다만, 운동경기장·골프장·스키장 내부,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등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은 이법의 적용 대상인 옥외광고물에 해당됨

나. 게시시설(법 제2조제2호)

-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 예)- 옥상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공작물)
 -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지주 또는 철제 구조물(공작물)
 - 돌출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식 구조물(공작물)
 - 아치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물 등

다. 옥외광고사업(법 제2조제3호)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필요

라. 기타 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

- 간판 또는 광고물 : 옥외광고물을 뜻함
- 광고물등 : 광고물과 게시시설을 포함한 총칭
- 표시 : 표시 또는 설치를 총칭
- 관리자등(광고물) :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공구조물 :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 등으로 만든 구조물
- 옥상구조물 :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옥탑·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 네온류 : 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 전광류 :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한 것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광고물
- 발광다이오드: LED(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
- 액정표시장치: LCD(액정에 가한 전압에 의해 분자의 배열이 변하여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
- 디지털홀로그램: 디지털로써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
- 전자빔: 전자총에서 나오는 속도가 거의 균일한 전자의 연속적 흐름으로 방사되는 것
- 동일모형: 동일한 형태나 모양 등으로 만든 물건 등
- 판류형: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벽면 등에 부착하는 것
- 입체형: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건물 등의 벽면 등에 직접 부착하는 것
- 편익시설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물
-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생활형광고)-자기 업소의 자영업 등 광고
- 타사광고: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상업용광고)-자기 건물 또는 업소와 관련이 없는 광고
- 특정시기: 국제행사, 연말연시 또는 체육·문화·종교행사 등의 행사기간을 전후한 시점(기간)
- 공공목적 광고물: 국가 등(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 순수한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 공공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

- 도로의 굽은 지점: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 도로의 범위: 도로,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
- 도시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보호지구·미관지구·경관지구·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지구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 해설〉

○ 『고시』와 『공고』

-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의미
예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영 제15조제1호라목)
-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시와 큰 차이점은 없음
예시)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영 제40조제2항)

○ 『적용』과 『준용』

- 『적용』은 규정된 사항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다른 사항에 적용되는 것을 뜻함
예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9조제4항)
- 『준용』은 규정된 사항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함
예시)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영 제14조제4항제1호)

○ 『본다』

-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으로 그렇다고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하는 것
예시)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제4항)

○ 『협의』 『동의』 『승인』

- 『협의』는 주로 대등한 관계에 쓰임
예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법 제4조의2제2항)
- 『동의』는 대등한 관계나 상·하간에 “동의하여 준다”는 취지로 쓰임
예시)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2항)
-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로부터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임
예시)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
- ※ 『협의』라는 문자의 의미만으로는 상담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많음

○ 『기일』 『기한』 『기간』

- 『기일』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의한 경우에 쓰임
예시)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영 제37조제3항)
-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어떤 일시의 도달에 의한 경우에 쓰임
예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법 제10조의3제6항)
-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말함
예시)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영 제29조제3항제4호)

○ 『또는』 『및』

-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는 · (가운뎃점) 또는 , (쉼표)으로 연결함
예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법 제4조의2제2항)
-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는 · (가운뎃점) 또는 , (쉼표)으로 연결함
예시)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영 제15조제1호나목)
- ※ 예외적으로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연결하는 경우와 선후관계 등 관련있는 단어를 연결하는 경우에도 사용함

○ 『이상』 『이하 (이내)』, 『초과』 『미만』

- 『이상』 『이하 (이내)』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더 많거나 적음(작음)을 의미
예시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7조제2항) ⇒ 5명과 15명을 포함함
예시 2)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10m를 포함함
- 『초과』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
예시 1)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법 제8조제1호) ⇒ 30일을 포함하지 않음
예시 2)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영 제4조제1항제2호나목) ⇒ 5m를 포함하지 않음

○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 『한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
예시 1)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법 제9조제1항) ⇒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함
예시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조의2)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의미함
예시) 위탁할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 위탁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됨

3. 옥외광고물의 분류(16종류) (법 제2조·영 제3조)

광 고 물	정 의
벽면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로,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입 간 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현 수 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론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 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 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로로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 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물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 디지털광고물의 적용 및 표시대상(8종류)(영 제3조의2)

-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옥외광고물 분류 (예시 사진) 〉

■ 벽면 이용 간판



■ 돌출간판



■ 공연간판



■ 옥상간판



1) 사진출처 :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2823949&imageUri=http%3A%2F%2Fdbstchumb.phinf.naver.net%2F3764_000_4%2F20150718121548059_NJUSK0KN6.jpg%2FGC042P23939.jpg%3Ftype%3Dm4500_4500_fst_nce%26wm%3DY&cid=55775&categoryId=56050

■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¹⁾



■ 벽보



■ 전단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법 제5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정책 수립·추진
-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광고물 및 관련 산업발전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
 - 주민참여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조성
 - 옥외광고사업 시설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
 - 필요한 예산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
 - 우수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 발전 도모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광고물등의 수준향상과 특색있는 발전을 종합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및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권고 및 기준 제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 수립·추진, 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자율규제 촉진을 위하여 규제완화, 우대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
-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개발·보급

제2장 허가 및 신고

1.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가.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위부분(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그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됨)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하였으므로 허가대상에서 제외(영 제19조제3항)
선전탑·아치 광고물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기타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온류(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 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예외 : 허가대상에서 제외〉 -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함)
게시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나.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5조)

광고물 종류	신 고 대 상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대상 벽면 이용 간판이 아닌 것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은 제외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위부분(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 간 판	○ 모든 입간판
현 수 막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하였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영 제19조제3항)
벽보·전단	○ 모든 벽보와 전단
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

2. 허가·신고없이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중
 - ① 표시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②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③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 위 ①내지 ③항의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적용상 주의〉

광고물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법령과 조례의 표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법 제3조제3항, 영 제3장)

- 표시방법 등 위반시 제재 대상임(법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등)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제외)됨

3. 광고물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법 제3조·영 제4조, 제5조)

-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허가·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로서 같음함(영 제7조제4항)
- 게시시설만을 별도로 허가신청이나 신고한 경우,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게시시설을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이 법령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로 같음함
 - 이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이 법령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 사전제거 및 불필요한 게시시설 설치 사전 방지)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대하여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
 - ※ (대상) 옥상바닥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옥상간판 게시시설, 지주 이용 간판 게시시설, 현수막 게시시설 등임
- 이 경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4. 허가·신고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법 제3조·영 제6조)

가. 허가·신고대상 지역·장소(법 제3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도로·철도·공항·항만·케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도로·철도·공항·항만·케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 거리 1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임
-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대상지역·장소로 볼 때 전 국토의 모든 지역·장소가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신고대상임(이 법의 정의에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을 표시한 지역·장소 제외)

나. 허가·신고대상 물건(영 제6조제2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허가·신고대상물건에서 사용된 용어 해설〉

- 철도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함
- 도시철도차량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 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함
- 자동차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함
-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함)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항공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함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함

5. 허가·신고절차(법 제3조·영 제7조)

가. 허가처리 및 신고수리기관

- 일반적인 광고물 : 시장·군수·자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법 제3조·영 제7조)
 - ※ 교통수단이 둘 이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광역단위 광고물: 시·도지사(법 제3조의2·영 제11조)
 - 광역단위 광고물: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나. 허가처리 절차(영 제7조제1항)

1)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시 기재 및 확인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업소가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기타란에 그 인가·허가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 당해 관련부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등 조치(인·허가 등 없이 광고물 표시행위 사전방지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위반 사전예방 등)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리자: 당해 건물·토지 등의 사용·관리 등에 대한 권한(법률·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을 위임 받은 자

〈적용상 주의〉

-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토지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전체소유자란 등기상 권리를 가진 자)
-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주상복합상가)에 광고물 설치 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 건물 등의 옥상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을 포함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예외:제출서류에 대한 예외규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처리기간 : 7일

3) 허가증 교부

-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때에 교부(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다. 신고수리 절차(영 제7조제2항)

1) 신고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하여는 허가 절차와 같음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2) 수리기간 : 3일

3) 신고증명서 교부

- 신고수리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 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검인, 압인, 천공)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음

6.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법 제3조·영 제8조)

- 광고물등이 금지광고물과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법 제5조)
- 종류별 광고물등의 세부 표시·설치방법 및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영 제3장·제4장)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영 제24조)
- 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
- 다른 법령에 따른 광고표시 내용 등 제한사항 위반되는지 여부(영 제5조제2항제6호) 등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보호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의료법 등
 - 필요시 관련 부서 등과 협의 처리
- ※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업무처리는 업무담당자 등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적법한 경우에 한해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후,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등 교부(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영 제8조제3호)

광고물의 종류	표 시 기 간
1.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	3년 이내
4. 공연간판	2년 이내
5. 옥상간판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6의2. 입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8. 애드벌론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9. 벽보	15일 이내
10. 전단	15일 이내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3년 이내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30일 이내
14. 선전탑	30일 이내
15.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 창문이용 광고물(네온, 전광, 디지털)	3년 이내

※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름

7.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법 제3조·영 제9조)

가. 변경허가의 절차(영 제9조제1항·제2항)

구 분	내 용
제출처	○ 허가를 받은 행정기관(행정청)
변경사항	○ 광고물등의 규격 ○ 사용자재 ○ 광고내용 ○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허가증

	〈예외: 제출서류 축소 및 생략〉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적용상 주의〉 위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광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절차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신청
교 부	○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을 새로 발급

나. 변경신고의 절차(영 제9조제1항·제4항)

구 분	내 용
제출처	○ 신고수리를 한 행정기관(행정청)
변경사항	○ 광고물등의 규격 ○ 사용자재 ○ 광고내용 ○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신고증명서 〈예외: 축소 및 생략〉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음
교 부	○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

다. 광고물 관리자의 변경(영 제9조제3항)

- 변경내용: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법 제10조)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 제출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행정청)
- 제출기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법 제3조·영 제10조)

구 분	내 용
제출처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행정청)
제출기한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이내
제출서류	○ 종전의 표시기간 1년 미만인 광고물등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 종전의 표시기간 1년 이상인 광고물등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외: 자사광고인 경우 제외) 〈예외: 허가기간을 신고하여 연장(영 제10조제2항)〉 - 대상 광고물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안전점검(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방 법: 대상 광고물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교 부	○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 ○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임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만 제출

9.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등 수수료(법17조)

- 광고물등에 대한 표시·설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할 때도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10. 광고물 실명제(법 16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

- 표시내용: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 ※ 허가·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제3항)
- 표시대상 광고물(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제1항)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예외:자율관리규정의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한 광고물과 정비시범구역의 간판정비사업에 따라 표시·설치한 광고물 등은 제외

- 표시위치 및 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제3항·제4항)
 - 표시위치: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래부분에 부착(입체형 등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래부분에 부착)
 - 표시방법: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
- 그 밖의 실명제 관리·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

제3장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법 제3조제3항·영 제12조)

① 표시내용 관련(영 제12조제2항·제3항)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 특별한 사유란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한글 또는 외국문자가 포함된 내용)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등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가능

② 게시시설 관련(영 제12조제4항)

- 광고물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가능
⇒ 여러 가지 모형으로 변형된 광고물을 표시할 때도 규정된 면적과 길이·높이 등은 초과금지

③ 공중에 위해방지 등 안전 관련(영 제12조제5항내지 제7항)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는 사용금지
⇒ 야간에 보행자·차량의 안전 등을 위해 빛을 발하는 도료의 사용은 금지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은 설치금지(입간판, 에어 라이트 등)
※ 입간판(영 제3조제6호의2)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능

④ 설치할 수 있는 수량 관련(영 제12조제8항)

○ 다음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 한 업소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
- ※ 입간판(영 제3조제6호의2)은 1개를 추가로 설치 가능

〈 간판의 총수량(시·도 조례표준안 제2조) 〉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

1.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다음의 경우는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추가설치 가능(상호 중복적용 불가)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 그 밖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간판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

1. 타사광고(영 제4조제1항)
2. 1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공연간판(시·도 조례표준안 제10조)
4. 하나의 업소를 표시하는 면적이 0.36㎡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토록 결정한 경우

〈 적용상 주의〉

- 시행령(제12조제8항)에서 규정한 간판의 총수량 3개(또는 4개)를 넘지 않도록 주의

⑤ 일반적인 표시방법(영 제12조)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시·도 조례)

〈 추가적인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3조) 〉

①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 금지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1/2 이내
※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 이하이거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입체형 포함)은 제외
⇒ 광고물등의 바탕색 : 광고판과 광고내용(글자·도형 등) 등을 합한 전체면적의 색깔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② 광고물등의 면적산정 방법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 적용상 주의〉

광고물등의 길이·높이 등의 산정은 최대 길이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

〈 광고물등에 피뢰설비 설치관련 관계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제2항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광고탑, 광고판)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건축물 포함)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mm²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4/5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14조)

가. 일반적인 표시방법(영 제14조제1항)

-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함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라 설계와 시공

나.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영 제14조제2항)

-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표시(설치)

다.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 (영 제14조제3항)

구 분	내 용
사용 제한지역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 〈 예외: 사용가능한 경우 〉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일반주거지역 중 너비 15m 이상인 도로변 ⇒ 광고물별 표시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는 적법한 경우만 가능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용금지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제한할 수 있는 추가 지역(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1항) 〉 -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제한할 때 영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의 규정 준용
표시방법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설치 ⇒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볼 수 있는 곳 (장소)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금지 〈 예외: 적용배제 〉 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광고물 ○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빛의 밝기 및 색깔 기준(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2항) 〉 -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함 -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표시방법

-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한 규정(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라.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4조제4항)

1) 사용 제한지역과 표시방법은 네온류(위 다항)의 표시방법 준용

2)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기준 등

구 분	내 용
표출대상	○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이 30㎡ 이상으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표출비율	○ 시간당 표출비율의 20/100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 〈 시간당 표출비율(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3항) 〉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100 이상을 표출 - 시·도, 시·군·구가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도의 홍보업무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함
표출방법	○ 국가가 의뢰하는 광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비용지급	○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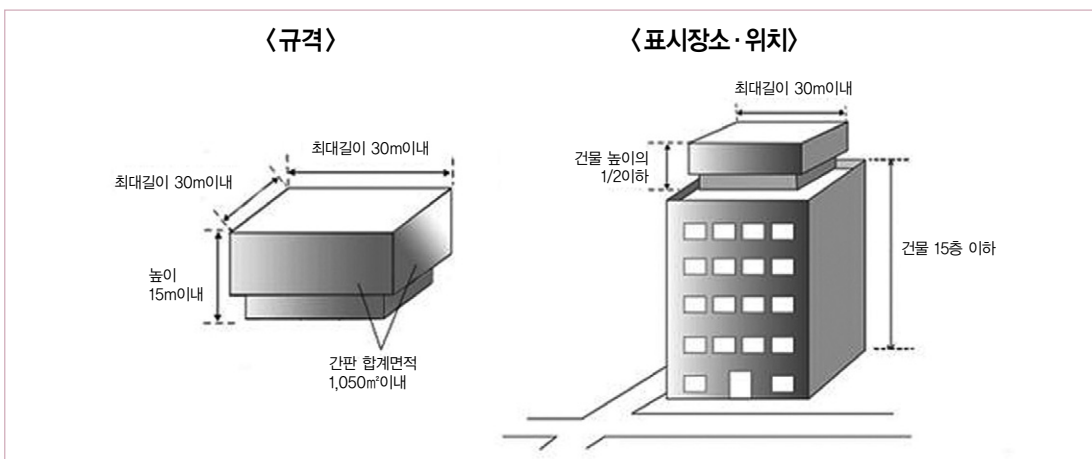
마. 광고물등에 전기 공급 또는 사용제한(영 제14조제5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가능

3.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가.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5조)

구 분	내 용
정 의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사항	○ 허가
표시기간	○ 3년 이내



1) 일반 옥상간판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표시가능 건물	①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 봄) 및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 지역으로 봄)에 있는 건물 (건물제외) -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②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③ 위 ②항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④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표시가능 건물	〈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표시가능 〉 -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네온류 · 전광류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점멸 · 동영상 변화금지) • 자기 건물 :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건물에 입주하여 사무를 보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 -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도록 표시하는 경우 ※ 위 ①에서 제외된 건물(건물제외)에는 표시불가
표시가능 건물 층수	○ 특별시의 경우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광역시(군 지역 제외)의 경우 :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표시가능한 건물 층수(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1항) 〉 광역시(군 지역 제외)에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 ○ 시(읍·면 지역은 제외)의 경우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의 경우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건물의 층수는 건축허가(신고)대장상에 기록된 층수를 말함 〈 예외 : 하나의 층수를 4m로 적용 〉 -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규정(표시가능 건물 층수)된 층수에 하나의 층을 4m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가능
층수 제한 없이 표시 가능 건물	○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 ○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별 최하 허용(특별시 5층)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 이하일 것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에 해당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광고 내용 표시 제한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가능 ⇒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상품)만 표시가능

표시
규격·기준

① 간판의 길이 및 면적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의 최대 길이 : 30m 이내
- 간판 각 면의 면적 합계 : 1,050㎡ 이내

② 간판의 높이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1/2 초과 금지

③ 간판높이 산정방법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 예외 : 옥상바닥이 아닌 장소로부터 간판 높이 산정 〉

- 옥상간판을 옥상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합계)이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1/8 이상이고,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 오지(돌출) 않은 경우에는 간판의 높이는 옥상구조물의 위쪽 바닥으로부터 산정
-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영 제 15조제4호나목)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cm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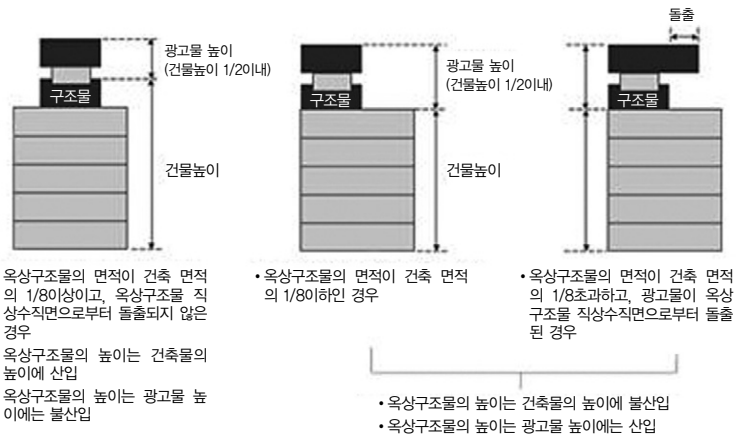
⇒ 옥상바닥은 건물 최상층의 옥상 바닥(지붕)면을 말함. 다만, 옥상에 부속건물이 있고 당해 부속건물이 건축허가(신고)대상상 층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부속건물 최상층의 바닥(지붕)면이 옥상바닥임

- 옥상구조물 위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포함하고 건물 높이에는 포함하지 않음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돌출) 있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참조

〈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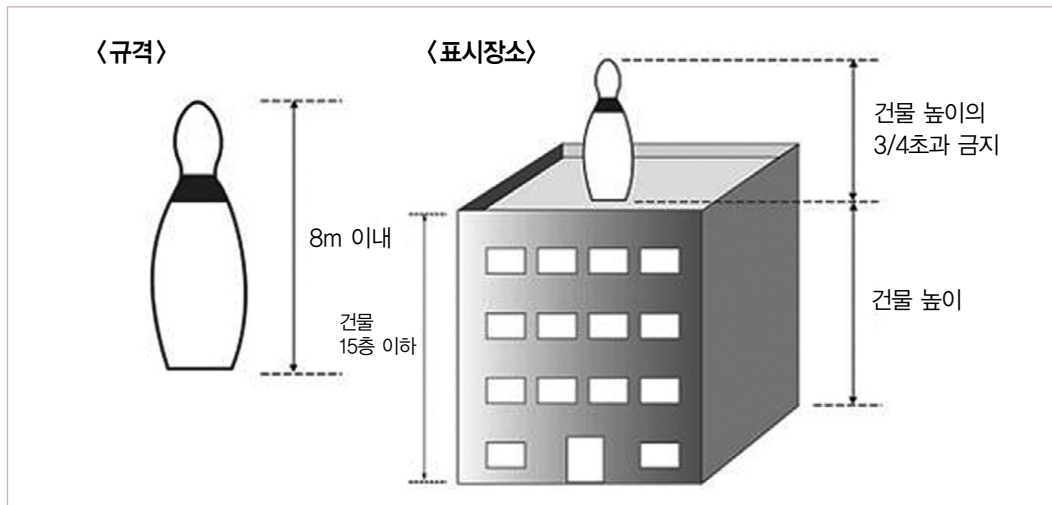
표시 규격·기준	④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위 ③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준용 ※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제9호 참조 〈 옥상간판 표시등 설치(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4항) 〉 옥상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부분)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표시방법	○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m부터 50m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유지 〈 옥상간판간 수평거리(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2항) 〉 －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m 이상 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 포함)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광고물등이 관할구역 밖이라도 옥상간판 간 이격거리 준수를 위한 통보 〈 예외 : 옥상간판간 수평거리의 제한내용 배제 〉 －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 시·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옥상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표시금지 ○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함 〈 예외 :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설계없이 설치 〉 － 높이가 180cm 이하인 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로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시·도 조례 위임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

2) 시·도조례에 위임된 옥상간판 표시방법

〈 위임된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가림간판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5항) 〉

구 분	내 용
허가·신고	○ 허가
표시방법	○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 금지 ○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표시 ○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 표시할 수 있는 지역·장소, 규격·층수제한, 거리제한 등 적용 배제

〈 위임된 볼링핀 모형의 간판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6항) 〉



구 분	내 용
허가·신고	○ 허가
표시규격	○ 간판 높이 8m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3/4을 초과금지
표시방법	○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자사광고) ○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 ○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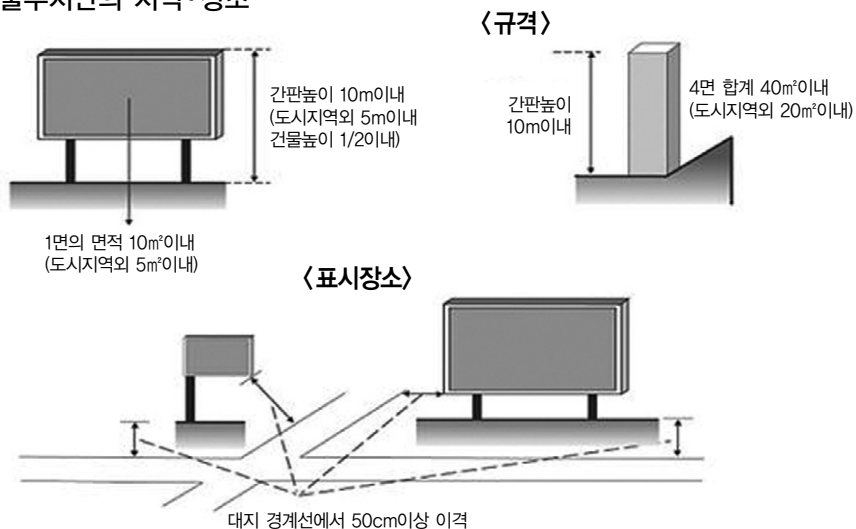
※ 옥상간판의 규격중 높이·층수의 산정방법과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고, 목조건물·가설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음.

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6조)

구 분		내 용
정 의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허가	○ 간판의 위부분(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
	신고	○ 간판의 위부분(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
표시기간		○ 3년 이내

1)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영 제16조제1항)

◇ 당해 건물부지안의 지역·장소



구 분	내 용
표시 기준 및 방법	※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소유토지라도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아니면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만 표시가능 ②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③ 위 ①·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건물 부지 안)의 표시방법은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예외 : 가림간판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 가림간판 표시 ⇒ 가림간판을 표시코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사전협의

〈 위임된 건물 부지 안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1항) 〉

구 분	내 용
표시에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장소에는 표시금지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표시규격	○ 도시지역 내의 지역의 당해 건물 부지 내에 표시하는 경우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10㎡ 이내 -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이내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 부지 내에 표시하는 경우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 초과 금지 -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5㎡ 초과금지 -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 초과금지

표시방법

○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 예외 : 하나의 간판 추가 〉

-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 추가표시 가능

※ 여건상 추가는 업소의 수가 많아 하나의 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함

○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의 거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간판의 돌출부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내의 미관지구안 등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토록 한 사항 준수 (별도 규정)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 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이하, 높이 1.5m이하로 표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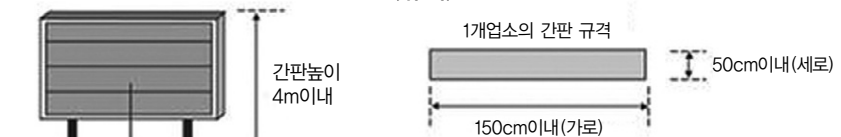
〈 예외 :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설치 불가 〉

-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전광류, 디지털광고물)

2)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 (영 제16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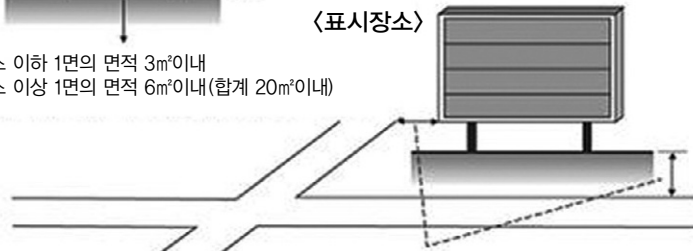
◇ 당해 건물 부지 밖의 지역·장소

〈규격〉



〈표시장소〉

3개업소 이하 1면의 면적 3㎡이내
4개업소 이상 1면의 면적 6㎡이내 (합계 20㎡이내)



구 분	내 용
표시 기준 및 방법	①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② 전기 사용금지 ③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 사용금지 ④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만 표시가능 ⑤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⑥ 위 ①~⑤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건물 부지 밖)의 표시방법은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예외 : 가림간판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 가림간판 표시 ⇒ 가림간판을 표시코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사전협의

〈 위임된 건물 부지 밖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2호) 〉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 하나의 간판에 표시 - 3개 이하의 업소 : 1면의 면적 3㎡ 이내, - 4개 이상의 업소 : 1면의 면적 6㎡ 이내, 합계면적은 20㎡ 이내 ○ 간판의 크기(1개 업소) - 가로크기는 150cm 이내 - 세로크기는 50cm 이내
표시방법	○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 하나의 연립형 간판에 통합 표시) 〈 예외 : 하나의 간판 추가 표시 〉 -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 추가 표시 가능 ※ 업소의 수가 많아 하나의 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광고효과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설치장소의 여건상 불가피하여 2개로 표시하여야 할 때로 제한

표시방법	○ 보도·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간판의 이격거리(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시) -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유지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은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유지
세부적인 표시기준	○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 - 건물 부지 밖의 표시규격·방법의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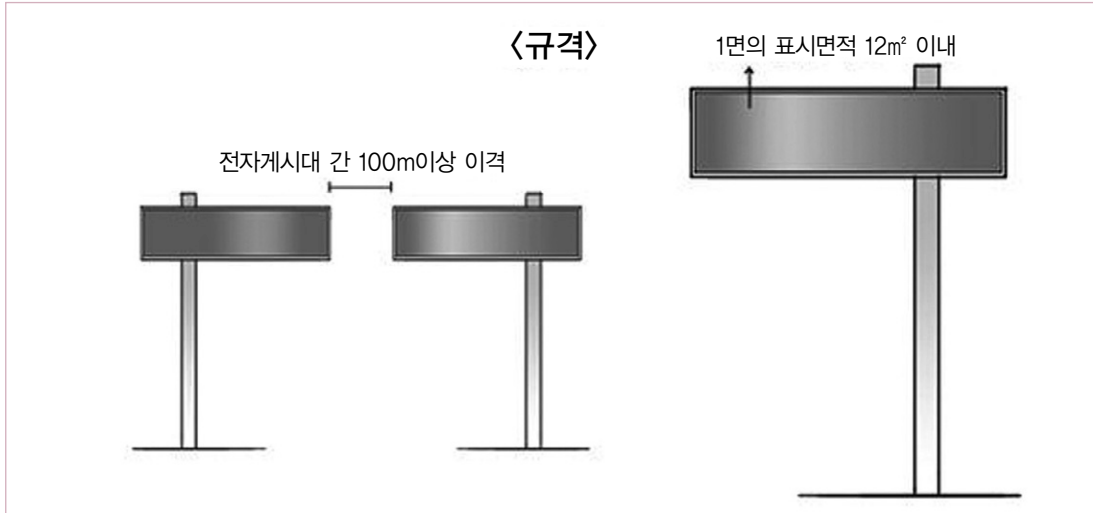
〈 위임된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3항) 〉

구 분	내 용
표시방법	○ 건물의 부지 안과 밖에 표시하는 간판의 표시방법(영이나 시·도 조례표준안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사전 협의

3)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영 제16조제4항)

구 분	내 용
표시 기준 및 방법	○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로 등으로 표시 ○ 전기 사용금지 ○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과 공공목적 내용만 표시가능 ○ 그 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 준수 ※ 건물의 부지 안 및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표시 가능

4) 전자게시대(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영 제16조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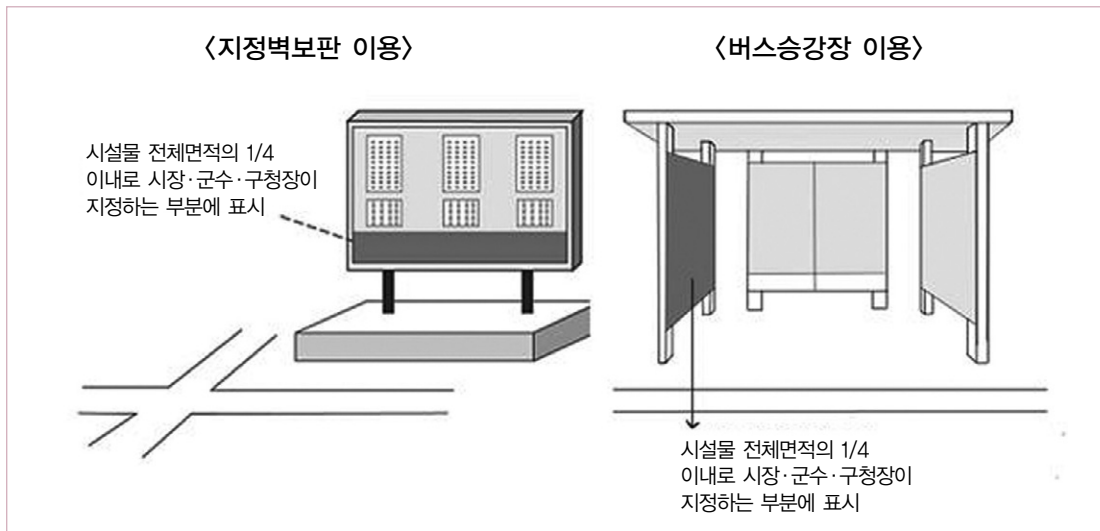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설치가능 지역	○ 상업지역·공업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표시규격	○ 표시면적(광고내용) 12m² 이내
표시방법	○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유지 ○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 ⇒ 이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제외)의 기준을 시·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가능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4조) 적용(준수)

〈 위임된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3항) 〉

구 분	내 용
설치가능 추가지역	○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계시대 간 이격거리	○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 100m 이상 유지
표시방법	○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 표시금지 ○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으로 표시
세부적인 관리기준	○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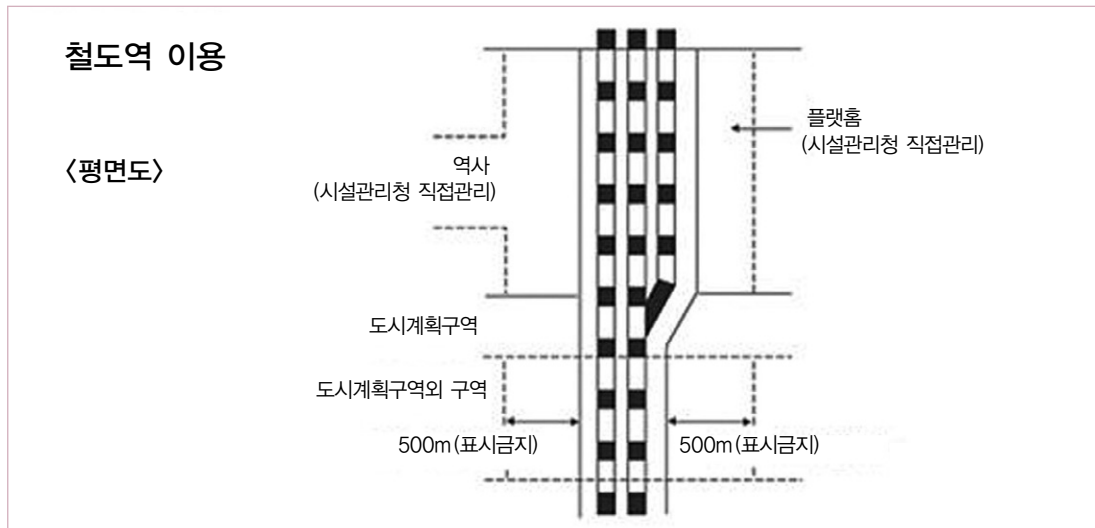
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7조)



구 분	내 용
정 의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사항	○ 허가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대상 공공시설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계시대 ○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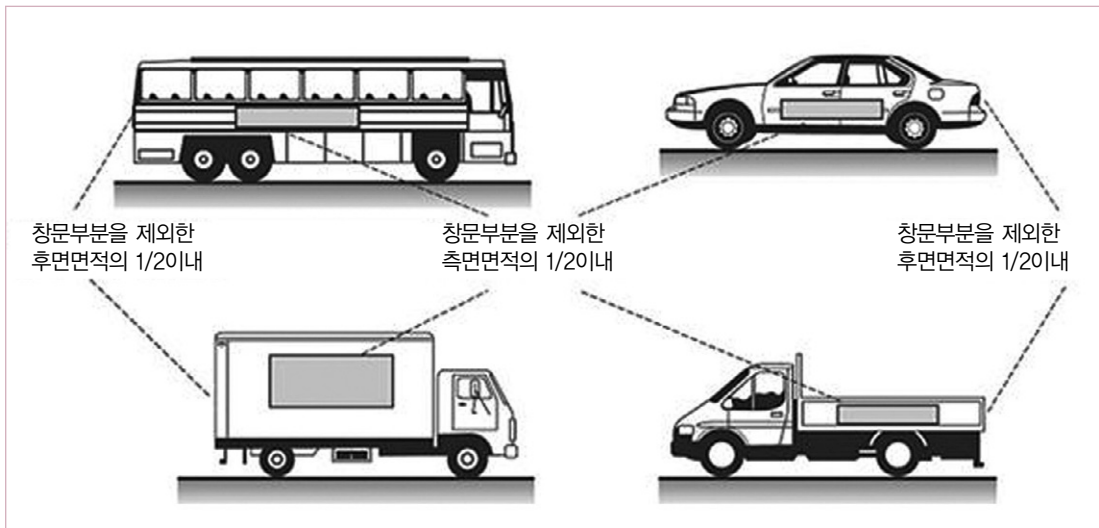
표시대상 공공시설물	※ 국가등의 시책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과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 전광판, 육교 현판은 광고물을 표시(타사광고)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지정 금지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시·도 조례표준안 제7조) 〉 - 휴지통 - 벤치 - 공공자전거보관대 ※ 지역 특산품, 농산품 등을 표시한 시설물은 상품광고이므로 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시설물) 외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편익시설물로 볼 수 없음
표시방법 및 규격	○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 〈 적용상 주의〉 - 공공시설물 면적 계산은 전면·후면·측면 등을 합한 전체면적의 1/4 이내 - 광고내용 표시위치는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하단 등)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치 표시(광고물은 전체면적 1/4 범위 내에서 전면·후면·측면에 각각 균등하게 표시) ○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됨 ⇒ 공공시설물의 기능·용도·설치 목적 등이 광고물보다 우선되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 ○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준수

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8조)



구 분	내 용
정 의	○ 교통시설(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허가 ※ 교통시설(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 시설관리청에서 따로 정하여 표시토록 위임된 광고물은 제외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방법	①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광고물 표시(시설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 시설의 관리청은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광고물을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라도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게시시설 포함)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 준수 ② 위 ①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여 표시

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



구 분		내 용
정 의		○ 교통수단(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로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허가	○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신고	○ 허가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관리청 위임	○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지하 구간 운행)
표시기간		○ 3년 이내 : 철도차량(열차)·자동차·항공기·선박의 외부 ○ 30일 이내 : 비행선 외부
일반적 표시방법		○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금지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차체 등에 밀착토록 부착
표시면적 위임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1/2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함

1)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제1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1/2 이내
표시방법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 표시(앞면 표시금지) ○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에 표시 ※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는 타사광고 표시가능

2) 비행선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제2항)

구 분		내 용
표시방법		○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 ○ 튀어나오게(돌출)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금지 ○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는 타사광고 표시가능

3) 선박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19조제4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1/2 이내
표시방법	○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금지 ○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할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선박의 운행 등 현실을 감안하여 자가용, 사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는 타사광고 표시가능

4) 위 1)~3) 이외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16조제5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1/2 이내
표시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 제외)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 ○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 가능 ※ 자사광고만 표시 가능

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영 제19조의2)



구 분	내 용
허가·신고 사항	○ 허가
표시기간	○ 시범기간(2018. 6. 30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로 정함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대전지역 등록택시 50% 이내, 최소 200대)

표시기준
및 방법 등

- ①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뒷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를 시범적(2018. 6. 30일까지)으로 표시 가능
- ②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
- ③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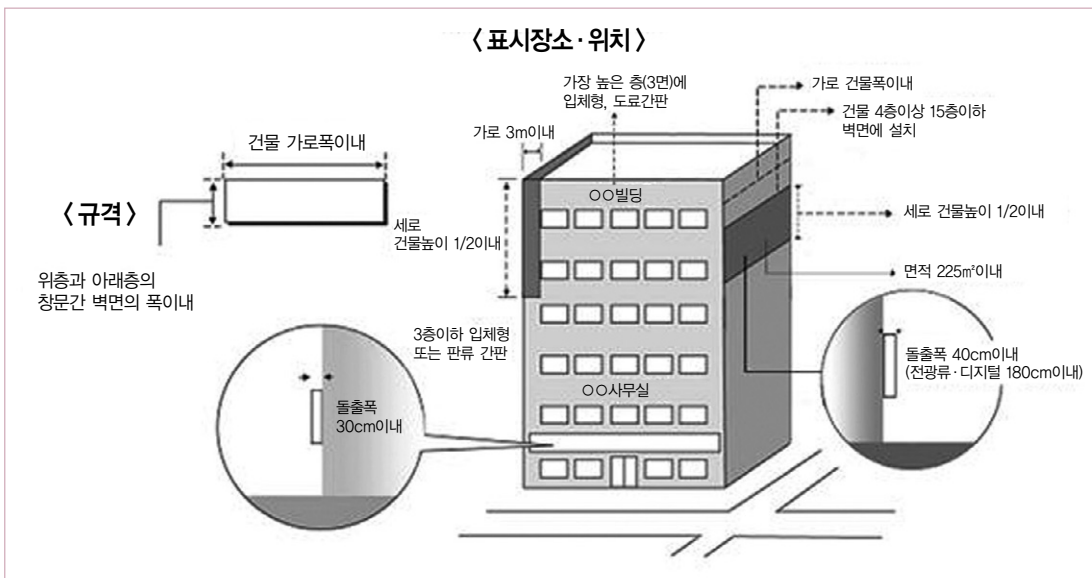
사.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20조)

구 분	내 용
표시방법 및 위임	○ 입간판(영 제3조제6호의2)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 ※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밖과 인도·도로 등에 설치금지 ○ 시행령(영 제3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공연간판·입간판·현수막·애드벌룬·벽보·전단·선전탑·아치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함

4.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 영 제20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가.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8조)



구 분	내 용
정 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로,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 가 신 고 사 항	허 가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신 고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신 고 배 제 ○ 표시면적이 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규격	○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 예외 : 표시규격에서 예외되는 경우 〉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옆면 및 현수식 간판과 세로로 길게 표시(가로는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하는 간판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면적은 225㎡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하는 간판 (창문, 환기구 등에 설치 불가)
표시수량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 가능 〈 예외 : 간판의 추가표시가 가능한 경우 〉 ①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 이하의 간판 ② 건물 최상단에 입체형·도로로 표시하는 간판 ③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타사광고 등) ④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하는 간판과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를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간판(1면의 면적 3.5㎡ 이하, 두께 30cm 이하) ⑤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4㎡이하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 ⑥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표시수량

- ⑦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 위 ③·④·⑦항을 제외하고는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됨

표시방법

- ①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cm 이내

〈 예외 :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완화규정 〉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40cm 이내 (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cm 이내)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cm이내로 표시 가능

- ② 건물의 3층 이하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

-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로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은 가로는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 표시

2. 위 ②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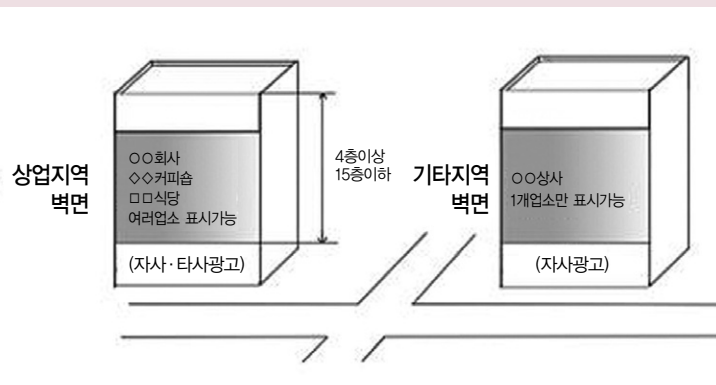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가로는 건물의 가로폭 이내)

○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음

〈 적용상 주의 〉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이용 간판의 상업지역, 기타지역 표시방법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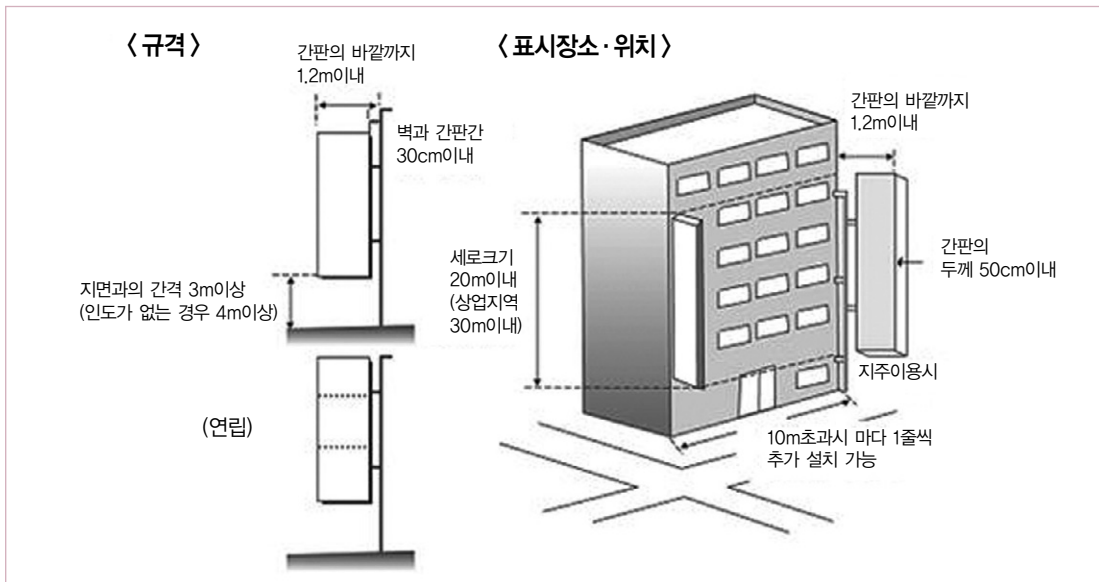
- 상업지역 : 규격의 범위내에서 하나의 간판(게시물)에 여러 업소 및 타사광고 표시가능
- 기타지역 : 하나의 간판에 1개 업소만 표시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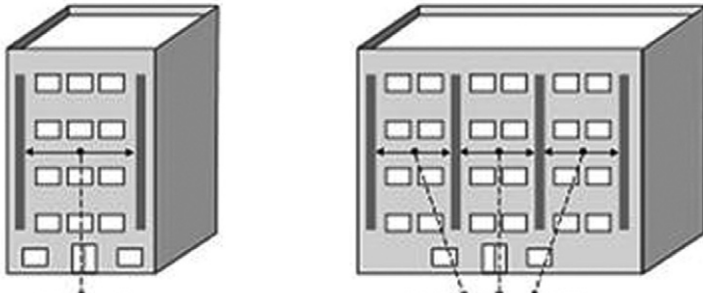
표시방법

- ④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1면의 면적이 3.5㎡ 이하이고 두께가 30cm 이하인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
※ 현수식 표시 : 차양면 천장에 고정시켜 매달아 표시하는 것
- ⑤ 벽면 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음
 1.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위 ③제2호)에 표시하는 간판(타사광고)
 2.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 이 경우 4㎡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 금지)

나.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9조)



구 분		내 용
정 의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허 가 신 고 사 항	허 가	○ 신고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신 고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규격	○ 세로크기는 20m(상업지역은 30m)이내 ○ 간판의 두께는 50cm이내 〈 예외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 -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를 초과하여 돌출 금지 - 세로크기는 150cm 이내 - 두께는 지름 30cm 이내
표시방법	○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 벽면의 가로폭이 1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가능 ⇒ 10m이하 1줄, 10m초과 ~ 20m이하 2줄, 20m초과 ~ 30m이하 3줄 등  간격 10m초과 간격 각각 10m초과 ※ 좌·우측 간판 간 수평거리의 간격은 10m가 초과 되도록 유지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 금지 -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별도로 세워 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cm 이내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지면과의 간격)에서 표시 가능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당해 건물 부지내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인도가 없으면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이상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돌출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벽면고정 지주이기 때문에 지주 이용 간판이 아님)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건축법상)에 돌출간판 표시 금지 -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은 표시가능 ※ 돌출간판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표시 금지

다.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0조)

구 분		내 용
정 의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허가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신고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표시기간		○ 2년 이내
표시규격		○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 1/3 이내 ○ 세로크기는 건물높이 1/4 이내
표시방법		○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 표시 ○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 -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가능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 30cm 이내 〈 예외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완화 〉 -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cm 이내로 표시가능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cm 이내로 표시가능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 -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출입불가 장소)

라. 입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1조)

구 분		내 용
정 의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레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신고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규격		○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 1면의 면적 0.6㎡ 이하 ○ 합계면적 1.2㎡ 이하 ○ 바닥면은 가로 50cm 이하, 세로 70cm 이하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

표시방법

-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 ※ 자사광고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
-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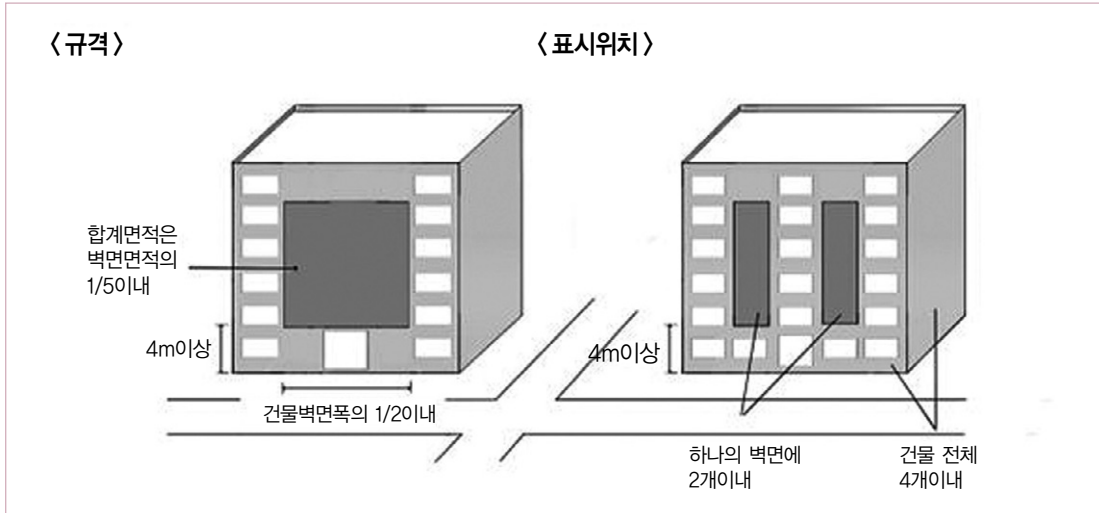
마. 현수막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

구 분		내 용
정 의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 항	허가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사항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표시기간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1) 일반적인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1항)

구 분		내 용
현수막 유형		○ 벽면 이용 현수막 ○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 지주 이용 현수막 ○ 건물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
표시방법		○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과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됨 ○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 ○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 ○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 포함)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 금지

2)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2항)



구 분	내 용
게시시설 설치대상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 설치대상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
표시규격	○ 게시시설은 가로 및 세로 크기는 해당 벽면의 폭(창문부분 제외)의 1/2 이내 ○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창문부분 제외)의 1/5 이내
표시수량	○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 게시시설은 건물 전체에 4개 이내
표시방법	○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 ○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 됨

3)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3항)

구 분	내 용
설치주체	○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표시규격	○ 가로 10m 이내 ○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
표시금지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금지
표시방법	○ 지정게시대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함. ○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 ○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금지 ※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음 ○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 ○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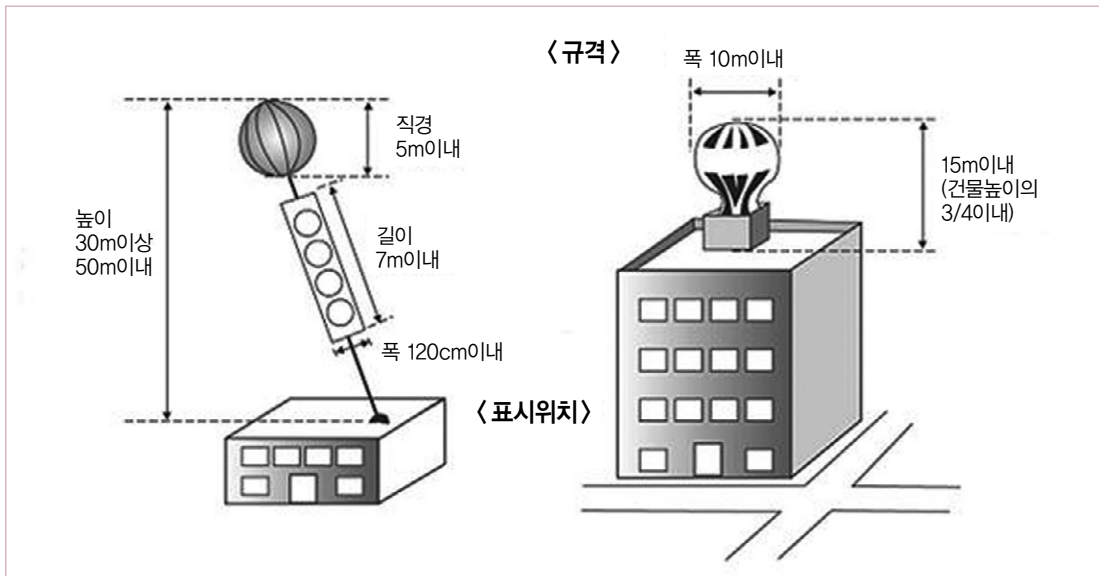
4)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4항)

구 분	내 용
일반적인 표시방법	○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
단독형 지주 표시방법	○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 설치 ○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1/2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음) ○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 가능 ※ 단독형 :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
연립형 지주·게시시설 표시방법	○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설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 연립형 : 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

5)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5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 ○ 현수막 면적은 벽면 면적의 1/30이내 표시
표시방법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가능 ○ 가림막에 직접 도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 사용 금지 ○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가능 ○ 그 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



구 분	내 용
정 의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허가
표시기간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론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제1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 직경은 5미터 이내 ○ 광고물은 크기 7m와 폭 120cm이내의 현수식으로 표시가능 ○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
표시방법	① 수소 등 발화성 기체의 사용금지 ②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또는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 ③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 〈 예외 : 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표시 〉 -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 -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 ④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론 간의 수평거리는 1km ⇒ 애드벌론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 위 ③항의 예외(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표시)의 경우에는 애드벌론으로 보지 아니함 ⑤ 위 ④항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시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론 간의 수평거리 따로 제한 가능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론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론 간의 수평거리를 1km 이상 유지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론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제2항)

구 분	내 용
표시가능 건물	①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 봄) 및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으로 봄)에 있는 건물 (건물제외) -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②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③ 위 ②항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④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 예외 : 표시할 수 있는 지역 외의 건물에 표시 〉 -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자기 건물 :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건물에 입주하여 사무를 보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

표시가능 건물층수	○ 애드벌론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 - 시 (읍·면지역 제외) : 4층 - 군 (시의 읍·면지역 포함) : 3층 ○ 애드벌론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층수는 15층
층수 제한 없이 표시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광고내용 표시제한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론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
표시규격	○ 높이는 15m 이내 ○ 폭은 10m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해당 건물높이의 3/4 초과금지
표시방법	○ 애드벌론 간의 수평거리는 시·도 조례표준안(제5조제2항·제3항)의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등 규정을 준용 ○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규정을 준용 ⇒ 불링핀 모형의 애드벌론을 표시할 경우에는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

3)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론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제3항)

- 영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와 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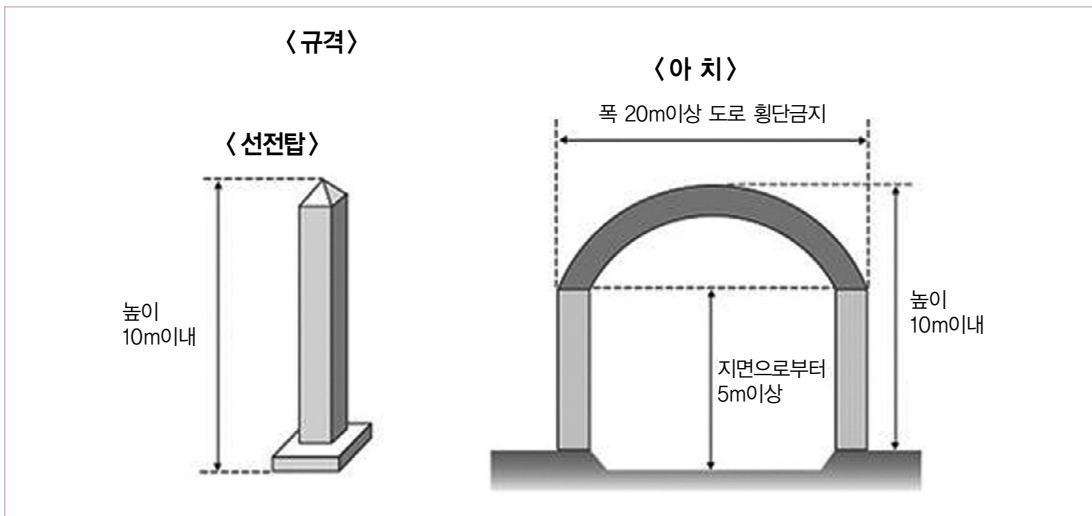
사. 벽보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4조)

구 분	내 용
정 의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신고
표시기간	○ 15일 이내
표시규격	○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
표시방법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 ○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

아. 전단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15조)

구 분	내 용
정 의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신고
표시기간	○ 15일 이내
표시규격	○ 가로크기는 30cm 이내, 세로크기는 40cm 이내
표시방법	○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 ○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됨

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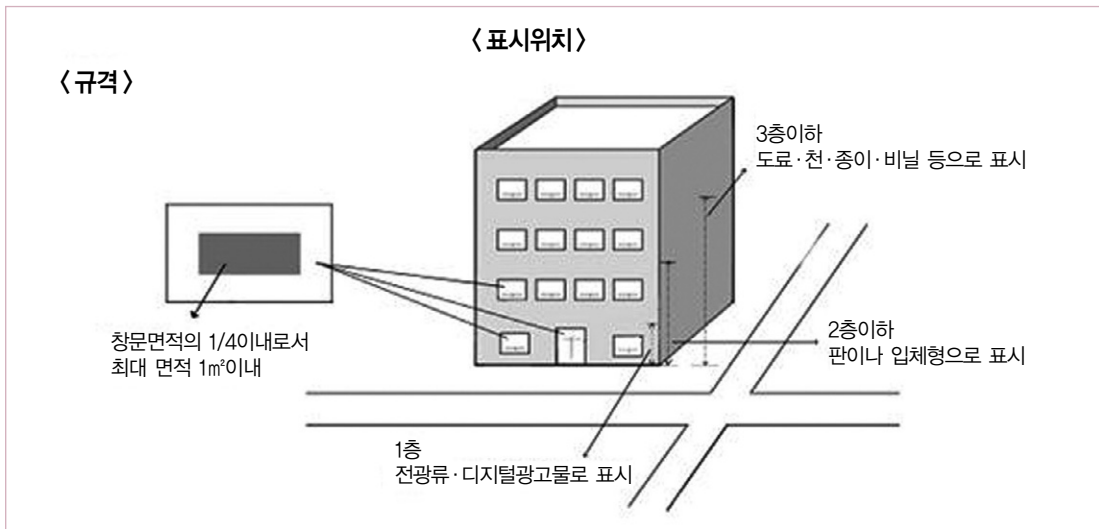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정 의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 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허가
표시기간	○ 30일 이내
표시규격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표시방법

-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표시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
- 폭이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 금지
- 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 금지

차.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7조)



구 분		내 용
정 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허가 신고 사 항	허가	○ 창문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신고 배제	○ 허가사항이 아닌 모든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이내(허가대상 창문이용 광고물만 해당됨)
표시규격		○ 표시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1/4 이내로서 최대 1㎡ 이내
표시방법		○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가능 ○ 건물의 층수에 따라 광고물을 유형별로 표시 - 건물 1층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표시 - 건물 2층이하 :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 - 건물 3층이하 :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

제4장 | 표시방법 완화

1. 표시방법 완화(법 제3조제4항·영 제21조)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관련 허가·신고의 기준 완화

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 가능지역(특정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중 제외되는 지구·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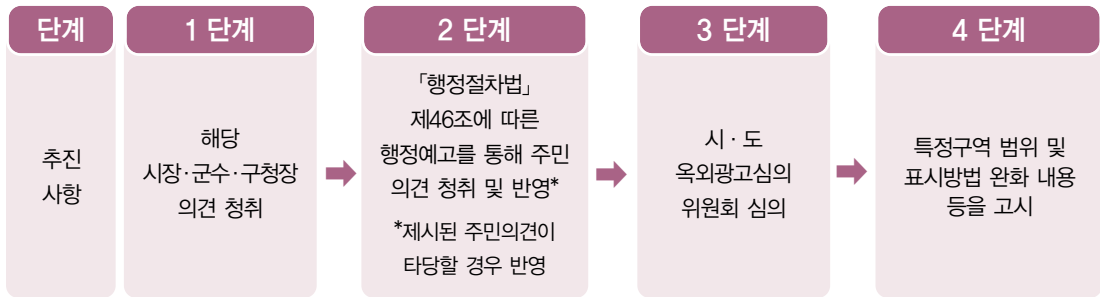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방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기준을 강화(법 제4조제2항)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허가·신고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특정구역에서는 강화되지 않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완화 가능(허가·신고기준 강화된 광고물등은 완화할 수 없음)

나. 표시방법 완화 지정절차와 내용(영 제21조·시·도 조례표준안 제18조)

1) 표시방법 완화 절차 및 내용(시·도 조례표준안 제18조)

-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 가능

-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제2항)
 -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2)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도 완화할 수 없는 사항(영 제21조제6항)

- 다음의 내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기준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됨(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 가능)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이내)

2.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영 제22조)

가.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한하는 특례 지역(영 제22조제1항)(면적단위 총량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이상인 지구만 해당)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시·도 조례표준안 제19조) 〉

- ①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영 제22조제1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벽면의 면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
- ② 위 ①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 광고물등의 종류
 -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위 ①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국민생활 등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완화 특례(영 제22조제2항)

-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 추가 설치가능
 - 간판 총수량 규정(영 제12조제8항)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입간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건물의 부지 안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기준 규정(영 제16조제1항)

3.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법 제3조제7항·영 제23조)

가. 대상 건물 및 제출자(일정 규모이상 건물)

- ①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 ② 위 ①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자 및 제출처
 - 제출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건물의 건물주)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광고물등의 허가권자)
 - 제출시기: 제출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광고물등(게시시설 포함)의 표시를 위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
-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함)가 포함되어야 함
 - ⇒ 간판표시계획서: 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

나.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 간판표시계획서는 건물에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전에 제출도록 되어 있으며, 미제출시 제재할 규정은 없지만 의무사항이므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신청 시 보완토록 반려 등 조치가능

제5장 |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1.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법 제4조)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제한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영 제24조)

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영 제24조제1항제1호)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
-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⑥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⑦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⑧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⑨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⑩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 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와 철도·고속철도의 경계선 주변에 대하여는 위 ①·②항의 규정적용
- ⑫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

- 각종 시설물의 보호와 효용성을 유지하고 도시미관유지, 주거·생활환경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지정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지물건(시·도 조례표준안 제20조) 〉

- 횡단보도안전표시등
-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 교통안전시설물
- 낙석방지시설물
-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 도로(인도를 포함)의 노면

다. 광고물등의 유형에 따라 표시가 금지되는 건물(영 제15조제9호·시·도 조례표준안 제9조제6호)

- 옥상간판(영 제15조제9호)
 - 목조건물·가설건축물(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 돌출간판(시도 조례표준안 제9조제6호)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건축법상 가설건축물)

⇒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은 표시가능

라. 금지지역·장소·물건에도 예외적으로 표시가능 광고물등(영 제24조제2항)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지역·장소라 해도 자사광고 등 최소한의 광고물등을 표시토록 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요인 해소
 - 자사광고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현수막)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
 - 전기 사용 금지
 - 표시방법은 가로등현수기 표시기준(영 제29조제5항)을 준용

〈적용상 주의〉

- 금지지역·장소·물건에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 영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 및 영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 등에 적합하여야 함

3.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가. 안전저해, 사행산업 등의 광고물(법 제5조제1항)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물과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

나. 광고내용에 대한 금지(법 제5조제2항)

1) 광고내용 표시 금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명백한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거짓내용 등을 표현코자 하는 광고내용도 범죄행위(명예훼손·무고죄 등)에 포함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2) 광고내용 표시 및 제작 금지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비판·불만 등의 표현내용은 입법목적에 저해하는 사항이므로 표시
 곤란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표시방법 강화(법 제4조제2항·영 제25조)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관련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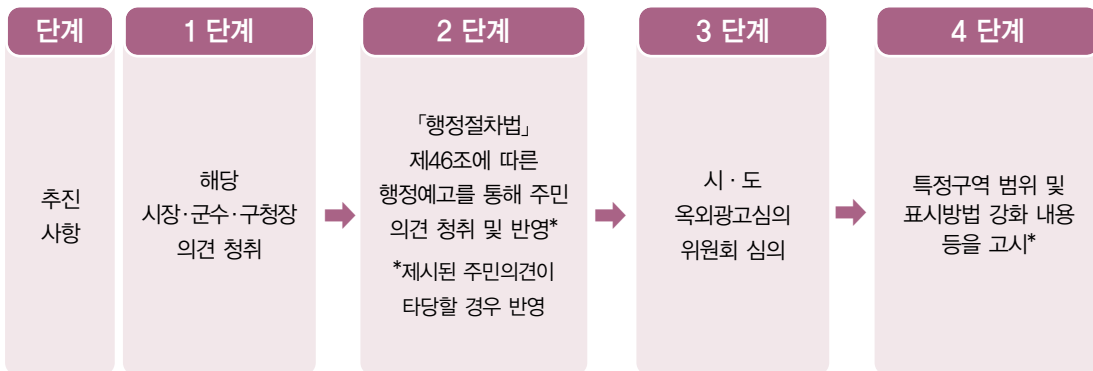
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강화 가능지역(특정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나. 표시방법 강화 지정절차와 내용(영 제25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

1) 표시방법 강화 절차 및 강화 사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

-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 가능

〈적용상 주의〉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광고물등의 표시관련 허가 또는 신고기준 강화)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영 제25조제4항)

-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제2항)
 -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는 다음 사업장은 강화대상에서 제외
(영 제25조제5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제3항)

-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은행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 위임된 시·도 조례로 정한 사업장(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제3항) 〉

-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 별표 1(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로 정한 사업장
 -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 ※ [별표 1]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2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산업·교통분야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따른 역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휴양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공용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공공·공용분야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6장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운영 등(영 제26조)

-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

가.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영 제26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나.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결정(영 제26조제2항·제3항)

- 광고물등 표시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 주민협의회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 자율관리협정의 주요내용
- ※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자율관리협정 효력 및 변경 등 (영 제26조제5항·제6항)

-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에게만 효력이 주어짐
- 주민협의회가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 이 경우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 결정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를 준용
-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의견의 뜻을 들은 후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등 (법 제4조의3)

-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운영

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대상 지역(영 제28조제1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③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 ④ 광고물등 표시완화 및 강화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⑤ 위 ①부터 ④항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나.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등(영 제28조제2항·제3항)

- ① 정비시범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 기능(이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 ②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③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는 위 ①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 지원가능
- ④ 위 ①항 및 ②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 정비시범지역 광고물등에 대한 지원(시·도 조례표준안 제22조제1항)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주민협의회 운영(영 제27조)

1)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영 제27조제1항·제2항)

-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

2) 주민협의회 임무(영 제27조제3항)

- ①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 ②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 ③ 위 ①·②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의 필요사항(영 제27조제4항)

- 그 밖의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법 제4조의4)

-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공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국제행사·연말연시 등)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가. 자유표시구역 지정 대상 지역(영 제28조의2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나. 자유표시구역 지정 절차 등

1)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법 제4조의4제1항·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유표시구역 지정대상 지역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자유표시구역 지정 절차 등

- ① 시·도지사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서 작성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위 ①항의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신청 위한 운영기본계획서를 작성,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 ③ 시·도지사는 협의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서를 해당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④ 시·도지사는 심의결과 결정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 ⑤ 시·도지사로부터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게재 및 통지
 - 게재 및 통지 내용
 -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 게재 :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통지 : 즉시(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⑦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지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유표시구역 지정사항을 14일 이상 게재

다.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법 제4조의4제7항·영 제28조의3)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게재 및 통지
 - 게재 및 통지내용
 -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 게재 :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통지 : 즉시(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를 통지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사항을 14일 이상 게재

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변경 등(법 제4조의4제6항·영 제28조의4)

- ① 운영기본계획중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행정자치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위 ①항을 제외하고 확정된 운영기본계획의 변경은 신규 지정절차 준용

마.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운영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참고 : 자율관리구역 및 자유표시구역 비교 〉

구분	구역	자율관리구역	자유표시구역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지정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자치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신청주체		주민협의회	시·도지사
운영지원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
예산지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5.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시·도 조례표준안 제22조)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제7장 |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1.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법 제6조)

가.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포함)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
 - ※ 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및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를 적용함
 - ※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영 제29조제1항)은 예외

나.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영 제29조제1항·제2항)

1) 표시방법이 적합한 경우 국가등이 허가·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범위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간판(5㎡이상 간판 제외)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시설물·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한 전기 미사용 안내표지판
 - ※ 국가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2) 이 법령에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

3) 국가등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 필요)

- ①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 옥상·지주이용·벽면 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20/100 범위(시·도 조례에서 정함)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해야 함.
 - ②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밖 설치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③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④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 ⑤ 대기 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⑥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⑦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한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⑧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
- ※ 국가등이 위 ①부터 ⑧항까지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함
- ⇒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육교 현판은 영 제17조제1항라목 단서에 따라 편익시설물(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지정이 불가함

4) 각종 행사·주요시책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준(영 제29조제5항)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금지
- 현수기의 가로 70cm 이내, 세로 2m 이내,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 표시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cm 이상

-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금지

5)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관련 추가사항 (영 제29조제6항·제7항)

-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표시방법 완화)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광고물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적용상 주의〉

종전(2008. 7. 9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없이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불법 광고물이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적용배제 (법 제8조)

가. 적용배제 이유

-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문패·표지비석, 표지석 등이나 국가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표시하는 내용도 옥외광고물에 포함됨
-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 법령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면 관례나 일상생활의 불편, 국가등의 목적수행의 애로, 행정의 효율성 저해 등 문제가 있으므로 허가·신고, 표시방법, 금지·제한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정함

나.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 (표시기간 30일 이내)

-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관례·혼례·상례·제례 등과 직접 관련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영리목적은 불가)
-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헌법상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학교나 종교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현실성과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배제하는 것임

※ 종교의식이란 기독교의 성탄절, 불교의 석가탄신일과 관련된 의식행사를 말함. [기타 종교별 행사는 제외(부흥회, 전도대회 등 각종 집회)]

-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광고물등은 허가·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행사 등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 법 제8조의 학교 및 종교의식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 목적이 학문 활동이나 순수한 종교의식 활동의 것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 영 제24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학교·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학문이나 종교의식의 내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표시기간 30일 초과)

-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 마을명칭, 공원 잔디보호, 주택의 문패, 묘지비석, 표지석, 각종 시설물의 명칭, 경고·주의내용 등에 관한 표시 등이 이에 해당됨

〈적용상 주의〉

- 단체·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이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이어야 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적용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 신고후 광고물등을 설치하였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집회 종료후 광고물(현수막 등)을 계속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한 시·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설치·표시를 하여야 함
 -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면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정당의 현수막을 이용하는 홍보의 적법성**
 - 현수막의 부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당해 시·도 조례에 규정된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당법」 제37조제2항의 '광고 등을 홍보하는 행위.....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일반적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 난립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해석하고 있음
- 정당의 홍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허가·신고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금지지역·장소에 30일 이내 설치 가능

3. 한국옥외광고센터(법 제11조의4)

가. 센터의 설립목적

-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

나. 센터의 임직원 채용 및 파견요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채용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 요청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다. 센터의 사업

- ①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 ②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③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 ④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 ⑤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⑥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 ⑦ 재원마련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 ⑧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⑨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⑩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 ⑪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⑫ 위 ①부터 ⑪항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라. 센터의 운영 및 기타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 설치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 관련 연구·조사를 다른 법률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
-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과 별도로 회계처리 및 관리해야 함.
-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포함)
-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4.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 광고물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
-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함

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영 제30조제2항)

- ① 옥외광고사업용 광고물등: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홍보탑
 - ※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별도로 규정(별표 3)

- ②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 3년 이내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
- ④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나.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변경설치 및 표시기간 연장 등(영 제30조제5항)

- 위 가③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지원대상 주요 국제행사(영 제30조제1항)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라. 신소재, 신기술 등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영 제30조제5항)

-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절차·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옥외광고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영 제30조제3항·제4항)

- ①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② 위 ①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영 제31조)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별표 2 제2호·제3호)

〈 [별표 2] 제2호·제3호 〉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산정할 때에는 광고물 설치비,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 설치·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

가.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분한다.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48/10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
- 2)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4/100을 배분

나.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각 조직위원회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50/10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한다.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그 국제행사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과 나목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배분비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
-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배분 비율을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배분비율과 그 외의 배분비율에서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시·군·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시·군·구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행령으로 정함

-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
-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법 제6조2)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법 제6조2제1항)

- 설치 목적: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 설치·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법 제6조2제2항)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 수수료(제17조)
- 과태료(제20조)
- 이행강제금(제10조의3)
-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용도 (법 제6조2제3항)

- 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②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 ③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④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위 ①부터 ④항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법 제6조2제4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함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법 제7조)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포함)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2조)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기관

- 시·도: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군·자치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 시·도, 시·군·구에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 설치

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 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
-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위 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명
 - 위촉대상
 -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이어야 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1항) 〉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 사: 1명(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 임 기: 2년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위원장(의장)
 - ※ 권한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
- 회의운영
 - 개의·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 심의 참여 불가
 -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4항)
- 회의안전 처리(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2항·제6항)
 -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전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

나.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영 제32조제5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5항)

1)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 구성(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5항)

- 소위원회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 소위원회 위 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 소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
- 소위원회 임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영 제33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4조)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영 제33조)

- 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 위임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4조) 〉

- 이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4조제2항)

-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2.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설치(법 제7조의2)

- 정책위원회 설치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가. 정책위원회의 구성

- 위 원 : 15명 이내
-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선출)
 - 위원장 임무 :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회의의 의장
 - ※ 직무대행 :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정책위원회 위촉대상(다음의 대상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영 제34조제1항)
 -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간 사 : 1명(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나. 정책위원회 심의사항

-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자유표시구역 관련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정책위원회 운영

- 개의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기타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영 제34조의2)

- 정책위원회 위원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임 및 해촉가능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영 제3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는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제9장 | 안전점검

1.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제1항·영 제36조)

- ① 다음 어느 하나의 벽면 이용 간판(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②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 지주를 세워 표시한 연립형 돌출간판의 표시면적이 각각 1㎡미만이어도 게시시설 면적이 1㎡이상이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③ 옥상간판(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 ④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 ⇒ 경사면에 지주(2개 이상)를 사용하여 설치된 지주 이용 간판의 높이는 지주위치가 가장 낮은 지면과 가장 높은 지면의 평균위치로부터 산정
- 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⑥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⑦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⑧ 위 ①부터 ⑦항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위임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시·도 조례표준안 제25조)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법 제9조제1항·영 제37조)

가. 안전점검의 시기(영 제37조제2항)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예외〉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 광고물등의 광고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님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나. 안전점검의 신청(영 제37조제3항)

- ①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허가·신고를 한 광역단위 광고물은 시·도지사)
- ② 신청시 첨부서류
 - 안전점검 신청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 ③ 신청시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④ 수수료의 부과(법 제17조제3호)
 -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 ⑤ 검사필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등은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

3.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법 제9조제2항~제4항·영 제38조)

가.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대상자(법 제9조제2항·영 제38조제1항)

- 이 법(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②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③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④ 그 밖에 위 ①부터 ③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등(법 제9조제3항·영 제38조 제2항)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시·군·구 조례로 정함

다. 안전점검 업무 위탁받은 자의 지위 및 책임(법 제9조제4항)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임원과 직원 포함)는 공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불법·부당한 행위 등 적발시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대상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4. 풍수해 등을 대비한 안전점검 등 (법제9조의2·영 제38조의2)

가. 안점점검 계획 수립 및 시기

- 실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허가·신고 한 광역단위 광고물은 시·도지사)
- 점검시기: 연 1회 이상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점검시기
- 점검대상
- 점검방법

다. 기타

- 풍수해 등 대비 안점점검에 대한 위탁에 관하여는 이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위탁규정을 준용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1.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

- ①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등
- ②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
- ③ 허가·신고기간이 경과된 광고물등
- ④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
- ⑤ 광고물등 자율표시구역·정비시범구역·자율표시구역 내에서 정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광고물등
- ⑥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 ⑦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등
- ※ 허가·신고배제 광고물등중 위 ②·④·⑥항을 위반한 경우 포함

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자(광고물등의 관리자등)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광고주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대행사업자 포함)
-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표시·설치를 승낙한 경우만 해당됨)
- ※ “위반되는 광고물등”은 위 가항에서 나열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을 말함

다. 조치방법

1)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조치하도록 계고(문서 등)

- 통상 계고기간 7일 내외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특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법 제10조의2제1항)

2) 긴급한 경우 서면 계고없이 제거 등 직접조치 가능

- 명령 불이행시
-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범죄행위,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추락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등
 -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가 극심하여 누구나 긴급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라.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 위 나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에서 규정

〈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로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마. 전화번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인적사항 요청(법 제10조 제3항~제5항)

1) 요청기관 및 대상 광고물

- 요청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위반 및 금지광고물등에 전화번호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등

2) 요청방법 (법 제10조제3항)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금지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①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영 제38조의3)

- 이의신청기관: 정지를 요청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
 - 결과통지
 - 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가능)
 - 통지내용: 이의신청 결과 및 이유 등
- ※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바. 기타 광고내용 등 심의요청 (법 제10조제6항)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 가능
-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법 제10조제7항·영 제39조의2)

가. 합동점검(법 제10조제7항)

- 목 적: 위반한 광고물등(불법 광고물등)의 정비
- 위반사항: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3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4조), 광고물등의 자율관리구역(제4조의2)·정비시범구역(제4조의3)·자유표시구역(제4조의4), 금지광고물등(제5조) 표시위반 등

나. 합동계획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등(영 제39조의2)

- 계획수립: 시·도지사
- ※ 시·도지사는 수립한 점검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점검계획 수립내용
 - 점검의 필요성
 - 점검 대상 지역
 - 점검 시기·방법 등
 - 점검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사항
 - 그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다. 점검결과 및 조치(법 제10조제8항·제9항)

- 시·도지사는 합동점검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제거 등 필요한 조치(비용청구 포함)를 취할 수 있음

3.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가.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② 위 ①항의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나.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법 제10조의2제3항·영 제40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자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예외〉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 가능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관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음.(보관시 위 ②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 ④ 위 ③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일반입찰에 부처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거한 광고물등의 반환 등(영 제41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거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 포함)을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함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라. 미반환 광고물 등의 귀속(영 제42조)

- 제거된 광고물등(매각대금 포함)에 대하여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 받을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됨

4.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광고물등

-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대상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 제외대상 광고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나. 이행강제금의 최고액 : 500만원

-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예외〉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징수 제외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계고 등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7일 이상)을 정하여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함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함

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등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이메일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 가능
※ 처분권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으로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 관련조문 참조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영 제43조)

-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43조 별표 5의 범위에서 시·도, 시·군·구 조례로 정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광역단위 광고물) 시·도 조례표준안 제26조 별표 2

② 위 ①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 포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함.

⇒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 고 물 등	이 행 강 제 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 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 · 지정정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벽면 이용 간판)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 · 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사. 이행강제금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5. 허가취소 등 (법 제13조)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광고물등의 규격·색깔·모양, 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한 경우
-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법 제15조제1호)

-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청문의 절차를 이행

다.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조치 시정명령 (법 제13조제2항, 제3항)

① 조치사유

- 위 가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등

② 행정조치

- 위 ①항에 해당되는 광고물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해당 광고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요청받은 자(관계 행정기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함

6.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법 제14조)

가. 등록취소대상 (법 제14조 본문 단서조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한 경우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등록취소 처분대상 행위(제14조 본문)

- 무허가(변경허가 포함)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무신고(변경신고 포함)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다.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법 제14조·영 제51조)

-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기간(6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영 제51조의 별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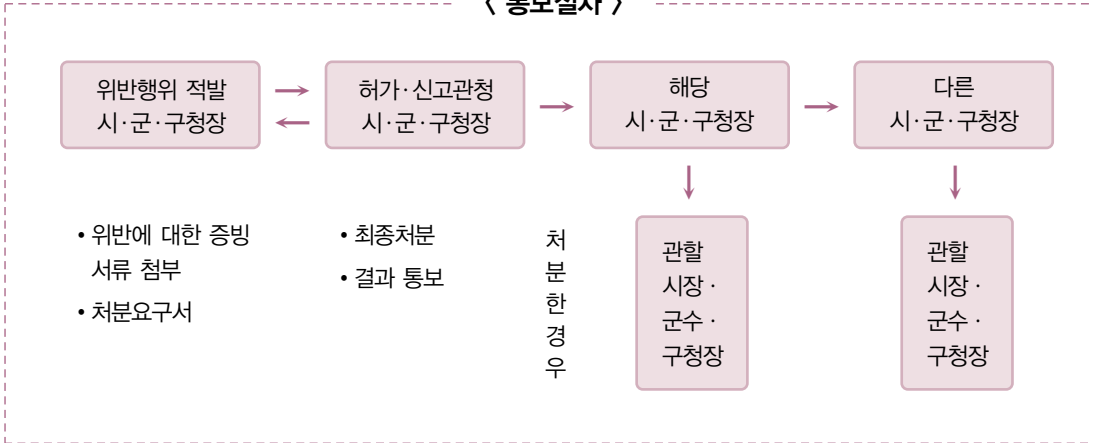
라. 영업정지등 처분 내용통보(영 제5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 15일 이내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하는 내용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성명·생년월일·업소명·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함

마. 관할구역 외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영 제53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대상 옥외광고사업자가 관할구역 외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통보절차 〉



바. 등록취소전 조치사항(법 제15조제2호)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절차 이행

7. 청문(법 제15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함.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허가 취소
 -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실시

※ 청문의 정의·목적

- 정 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목 적 : 불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 보호차원

8. 벌칙(법 제17조의3·제18조)

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등 중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이나 제한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제외)한 자

〈적용상 주의〉

동 대상지역·장소·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한 경우 고발가능(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도 해당됨)

- 다음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의 광고물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과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 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등 중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

9. 양벌규정(법 제19조)

① 행위자 처벌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그 사용주를 처벌하는 경우

○ 위 ①항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가능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과태료(법 제20조)

가.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옥외광고사업자는 100만원 이하

나. 과태료 부과대상

- 무허가·무신고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허가·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다.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55조)

○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55조 별표 8) 범위 내에서 시·도, 시·군·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

라.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20조제3항)

○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법 제16조)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② 과태료 산정(법 제14조)

-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③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④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법 제20조·제21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참고 : 비송사건절차법 관련조문〉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법 제24조)

- 기간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1.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법 제11조·영 제44조)

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법 제11조제1항)

-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같음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처리기간: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7일), 재발급(4일)
- 옥외광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징수(법 제17조 제4호)

나. 옥외광고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 (영 제44조제1항)

- ① 기술능력(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② 시 설: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③ 기타
 - 위 ①항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②항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결격사유(법 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시 제출서류(영 제44조제2항)

- ① 옥외광고사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② 위 나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증은 제외)
- ③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②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사본을 첨부토록 함

마. 옥외광고사업 등록시 검토사항(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영 제44조제4항)

- 위 나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가 위 다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발급 및 게시(영 제44조제5항)

- 위 마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신청인에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발급
-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함

사.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영 제45조)

-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사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

아.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영 제46조)

- 신청 사유
 - 옥외광고사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
- 재발급 신청 등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자. 옥외광고사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영 제47조)

- ①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 재개업의 경우: 위 나①항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 ② 위 ①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 국가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확인 절차 및 등록증 새로 발급에 대한 절차를 준용함

차. 옥외광고사업 영업장소 출입 검사(법 제11조제7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음
⇒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2.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법 제11조의3)

가. 단체의 설립 목적·업무 및 회원(법 제11조의3)

1) 단체의 설립목적(법 제11조의3제1항)

-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품위향상 도모
- ※ 단체는 법인으로 함(법 제11조의3제2항)

2) 단체의 업무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위탁업무
- 그 밖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3) 회원의 자격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 한 자
-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나. 단체의 정관기재 사항(영 제48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의 취득·상실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단체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다. 정관의 변경(법 제11조의3제6항·민법 제42조제2항)

- 정관의 변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설립 및 허가 포함)
- ※ 활동범위가 1개 시·도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설립 및 허가 포함)

〈「민법」 제42조제2항(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법 제12조)

가. 교육의 목적(법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사업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옥외광고사업자 자질향상 도모를 위함

나. 교육의 종류 등(법 제12조제3항·영 제49조)

1) 의무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신규로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2) 보수교육 등(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다. 교육의 실시(법 제12조제3항)

- ① 교육실시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른 시·군·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교육의 위탁(법 제12조제4항·영 제5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에 교육위탁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함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법 제20조제2항)

- 교육대상자(옥외광고사업자,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55조 별표 8)

제12장 | 기 타

1. 수수료 징수(법 17조)

가. 수수료의 종류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광역단위 광고물등 포함)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

나. 수수료 내역

- ① 광역단위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수수료(별표 3)(시·도 조례표준안 제28조제1항)
- ② 광역단위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별표 4)(시·도 조례표준안 제28조제2항)
- ③ 허가의 신청·신고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④ 위 ①내지 ③항을 제외하고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2. 적용상 주의(법 제2조의 2)

-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3. 주요 부칙

가. 옥외광고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2004. 12. 23)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08. 6. 24)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종전에 신고를 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나,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야 함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폐업하지 않는 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격이 없어도 등록한 것으로 봄

나. 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 2007. 12. 21)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다.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 2007. 12. 21)

- 광고물 실명제는 '08. 12. 22 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시행일 부터 6개월 이내 ('08. 12. 22)에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함

라.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 부칙 제2조, 2011. 3. 29)

-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함

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2016. 1. 6)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봄

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 2016. 1. 6)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봄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사.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2016.1.6)

-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아.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08.7.9)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자. 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08.7.9)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차.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 2016.7.6)

-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봄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봄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함
-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음

02

s e c t i o n



민원사례

행정자치부·자치단체에 문의가 많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옥외광고 법령 관련 질의 및 회신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옥외광고 업무 및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허가 및 신고
제 3 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 4 장	표시방법 완화
제 5 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 6 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 7 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 8 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 9 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제10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제1장 | 총 칙

Question 01

■ 간판 외 조명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2015년)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02

■ 국도변에 설치된 표석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2016년)

봉사단체인 ○○○클럽에서 국도변에 설치한 표석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도로변 등에 설치된 표석은 외형상 조각 작품, 기념비, 조형물 등 상징성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통상 상업적 내용이 아닌 일상적인 문구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변 등에 설치된 ‘표석’을 옥외광고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장 허가 및 신고

Question 01

■ 불교의 연등 설치(2013년)

시내 도로변에 설치한 연등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인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제8조제2호에는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으로“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제3조의 허가·신고 및 제4조의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시내 도로변 등에 약 한 달간 설치하는 사찰 연등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 인지의 여부는 그 설치물의 형태·내용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동 연등이 동「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 해당되고, 동「법」제8조 제2호의 규정과 같이 석가탄신일의 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02

■ 옥외광고 업무의 사무구분(201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예외)에 의한 광역단위 공공 시설물 광고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이 기관 위임사무인지 또는 자치사무인지 여부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99추30, 04다759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는 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수리, 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을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의 일종으로 시·군·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무(광역단위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성질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무는 자
 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3

■ 특정구역 내 전광류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 여부(2014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부지 안(중심상업지역)에 'LED 전광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4항에서는 “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
 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동법 제3조제6항에서는 “동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서는 특정구역에서도 완화
 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LED 전광류 지주 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동법 시행령 제
 21조제6항의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도시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04

■ 허가·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해당 여부(2015년)

뒷개가 있고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접조명 방식의 LED 가로형 간판을 허가·신고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로서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로 사용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LED 가로형 간판이라면 허가·신고 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uestion 05

■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2015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청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주의 ‘승낙동의서’ 없이 기존에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청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에 임차인이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06

■ 법원의 판결로 옥상간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관리자 변경 (2015년)

법원의 판결로 기존에 허가를 득한 관리자의 옥상간판(타사광고)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건물주로 결정된 사실을 근거로 광고물 관리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동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에 대한 소유권 변경 사실만으로 관할청의 옥상간판 허가처분을 위한 관리자 변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관할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옥상간판 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물 관리자 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07

■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입간판의 행정처분 가능 여부 (2015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입간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의 2호에서는 ‘신고 대상 광고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2에 따른 ‘입간판’을 합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는 입간판의 경우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에서 설치 근거가 없는 입간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할 것이며,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한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청의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신고 접수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08

■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2016년)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9

■ 주유소에 설치된 가격표시판에 대한 처리 (2016년)

주유소에서 설치하는 가격표시판이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6항에서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4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및 제7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에서 가격표시판의 표시·설치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설치하는 가격표시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장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Question 01

■ 영자간판 설치(2013년)

옥외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중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Answer

외국문자의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가 개정(1993.2.24)되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없이 옥외광고물 등을 외국문자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등은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Question 02

■ 사업자 등록에 따른 간판의 수량(201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8항에 한 업소에서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바, 1인이 2개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①〇〇, ②〇〇.com) 각각의업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8항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대표자 1인이 2개의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현장 실태조사 등 사업자등록의 하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관할청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3

■ 완충녹지를 도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201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5조 제2호의“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를 건물의 정면을 도로에 접한 면으로 볼 때, 완충녹지를 도로에 포함하여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13호, '11. 8. 30 시행)」제15조 제2호에“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이라고규정하고있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는 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등 공간시설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서“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녹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완충녹지를 도로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4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201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기존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경 없이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추가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 제2호에서는“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표시만을 위해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변압기의 외부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변압기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05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회신(2013년)

버스정류장 시설(쉼터)에 광고물을 부착함에 있어서 허가 면적 및 현 시설에 “동영상 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 문의

Answer

“버스승강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1호 다목에 따라 공공시설물로 분류되어 이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에 따르면 “표시면적은 공공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인 버스승강장에 광고물(상업광고)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버스정류장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영상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버스승강장 위치, 교통신호기와의 거리 등 주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동「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적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표시·설치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06

■ 한 업소에서 표시 가능한 광고물 총 수량의 제한 완화(2014년)

○○○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 업소에서 표시 가능한 광고물 총 수량의 제한을 완화(6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서는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조에서도 한 업소당 간판의 총 수량을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는 3개, 그 외 지역에서는 2개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고시[제2011-22호(2011. 3. 28)]제3호에서는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하고 곡각지점의 업소 등에 대해서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면서, 동 고시 제7조(적용의 특례)에서 2011. 1. 17일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22626호에 따라 제13조 내지 제31조의 표시방법이나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동 고시 내용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업소에서 설치 가능한 간판의 총 수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며, 시·도 조례 및 고시는 관련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간판의 총 수량을 정할 수 있으므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함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다면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7

■ 사업용 차량의 외부 광고 가능 여부 (2014년)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용 차량의 배경 색상과 유사하게 광고내용을 표시·설치할 경우 광고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으로서 문자 또는 상품·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그 표시 면적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의 1/2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의 배경 색상이나 디자인 등이 차량 측면에 표시된 광고내용과 무관하다면 광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상품이나 업소 등을 상징하거나 연상시키는 고유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차량의 배경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광고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8

■ 고속도로 본선 부지에 전광류 폴사인 설치 (2014년)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 전 유가정보 제공을 위하여, 고속도로 본선 부지에 전광류(LED)을 설치한 안내 폴싸인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호가목에서는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을 지주 이용 간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본선 부지에 설치 될 폴싸인은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본선 부지에 전광류 및 타사 광고가 설치된 폴싸인은 동법시행령 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09

■ 전력사업용 기상기기함에 대한 편익시설물 지정 가능 여부(2014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상 '전력사업용 기상기기함(변압기, 개폐기, 분전함 등)을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조에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1호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1호라목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등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4조에는 ‘전력사업용 기상기기함’이 금지하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공공시설물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법제처 08-0297, 2008.10.15.)는 점, 편익시설물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05.2.18, 선고, 2004도7807)”는 점, 우리부에서도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 배포한 시·도 조례 표준안(가이드라인)에도 시행령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지상변압기함’을 예시하고 있으며, 공중전화 부스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도 조례로 편익시설물을 정하는 데 있어 위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10

■ 비사업용 차량 내부에 소형 전광판 설치 (2014년)

스타렉스 차량(비사업용) 뒷면 유리창 안쪽에 소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나 행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문구를 표출할 경우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1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차량 상부 LED 전광판 설치(2014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소유 자동차 상부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 되는 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차량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였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적합한 표시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고 동법 제8조 제6호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적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보수를 안내하는 문구, 교통안내를 위한 방향지시 등과 같이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를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2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광고물 부착(2014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여부 및 허가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처벌 사항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을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고 「동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규정한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각 옆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였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에서 벌칙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13

■ 회전형 정보 게시대 설치 관련 (2015년)

지정게시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회전형 정보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에서 질의한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군·구)의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14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회신 (2015년)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아닌 개별적인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지정 후 버스정보안내기 면적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15

■ 지방공기업의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2015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5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옥외광고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하철역 또는 철도역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을 시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기 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는 취지와 도시철도 시설은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5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옥외광고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 등록 요건(기술능력과 시설 기준)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16

■ 곡각지점에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의 적용 범위 (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간판의 총수량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하층'에 있는 업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의 광고물 설치 수량에 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지하층에 있을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도시미관,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과 도로 사이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 허가청에서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와 이격 거리 및 시야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광고물의 추가 설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17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의 총 수량 제한 가능 여부 (2016년)

아파트 등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시설물에 건물의 명칭을 표시·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8항에서 규정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3개) 규정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간판의 총수량은 ‘업소’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 표시하는 명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간판 총수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시설물에 대한 명칭 표시가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18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6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3호에서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구체적 범위는?

Answer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네온·전광류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으로 광고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진행방향의 정면은 운전자가 도로운행 중 시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가시적 범위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전광류 광고물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uestion 19

■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2016년)

신규로 허가 신청이 접수된 타사광고 옥상간판에 대하여 옥상간판 간의 의무적 이격 거리 내에 자사광고 옥상간판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옥상간판 신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8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옥상간판의 신규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 도심교통과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자체 심의를 통하여 광고물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20

■ 옥상간판 간의 최소 수평거리 적용 범위(2016년)

○○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서 규정한 옥상간판 간의 최소 수평거리 적용 범위

Answer

○○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상업용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를 2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건축공사,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수평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제1항에서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서는 최소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도 조례에서 정한 옥상간판(네온류, 전광류) 간의 수평거리 50미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21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2016년)

아파트 단지 진입 도로변 인도(사유지)에 설치된 지주형태의 아파트 안내 표지판이 옥외광고물 법령 적용대상인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6호 가목에서는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을 지주이용간판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5호에서는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을 허가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호에서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설치된 지주이용형태의 표지판은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정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서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이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정한 광고물의 표시·설치방법에 대한 적용배제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22

■ 건설공사 안내를 위한 지주이용 형태의 표지판 처리(2016년)

건설공사 안내를 위한 지주이용 형태의 표지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1항에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안내를 위한 지주이용 형태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23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2016년)

항만시설 내부에서 차량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이동식 전광판 설치 가능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설의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고 시설 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24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한 가로형 간판의 설치 범위(2016년)

시·도 조례에서 건물의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층 이하의 범위에서 5층까지 확대하여 표시·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가로형 간판의 경우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제5조제2호에서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3층 이상의 위치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도시미관,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가로형 간판'의 표시·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 | 표시방법 완화

Question 01

■ 집합건물 간판표시계획 변경 (2014년)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 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의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간판표시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합건물에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판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판표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02

■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주체인 건물주의 정의 (2014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 규정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주체인 “건물주”의 정의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7항에서는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7항에서 규정한 “건물주”는 등기부 등 공부(公簿)상에 기재된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해석은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03

■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2015년)

시·군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특정구역 해제를 요청을 할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할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특정구역 해제 처분이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uestion 04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 (2015년)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법 제3조 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장 |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Question 01

■ 금지광고물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의 범위에 주류 광고 포함 여부 (2013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청소년 유해약물에 주류가 포함되는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금지광고물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의 범위에 주류 광고가 포함 되는 지 여부

Answer 「모든 주류광고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금지광고물의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동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며, 주류광고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물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6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2

■ 집회 관련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 (2014년)

집회 신고된 기간 동안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집회 신고 장소에 현수막을 상시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 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제8조 제4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 1649)하고 있으므로, 현수막 등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03

■ 행사 또는 집회 관련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 (2014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시설 앞에서 요구사항 등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경우 정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5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이라면 정비대상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4

■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의 허가·신고 배제 (2014년)

「아동복지법」제34조에 의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나타내기 위한 돌출형 표지물이 허가·신고 배제 대상인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는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을 동법 제6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으로 규정하여 동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아동복지법」제34조에 의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유괴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표시하기 위한 돌출형 표지물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의 허가·신고가 배제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05

■ 하천부지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 설치 가능 여부 (2014년)

하천 옹벽(제방, 둔치 포함) 등 하천부지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적용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라목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제2조제1호는 하천을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2호는 하천구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3항은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4항은 “하천관리청은 하천구

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에는 자체 없이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옹벽(제방, 둔치 포함)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 포함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귀 구의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06

■ 시립장사시설(화장장) 내부에 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2014년)

‘시립장사시설(화장장) 내부에서 LCD·TV·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수익 광고’를 추진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이 법과 관계없이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로서 ‘화장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광고물등이 설치된 장소가 옥내에 위치하여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지 아니하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없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옥내에 설치된 경우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 동법을 적용 받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차목에 해당되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07

■ 1인 시위 현수막의 적용배제 가능 여부 (2015년)

개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과정에서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시위의 형태와 개별법령 등에서 금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한 「동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포괄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uestion 08

■ 보도분리대 전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15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한 '보도분리대' 전면에 별도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 지정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보도분리대'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한 것은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분리대' 전면에 별도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 지정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09

■ 정당현수막의 처리 (2015년)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홍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므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10

■ 집회 현수막의 처리 (201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30일, 1일 24시간) 후 집회신고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동안 설치 가능한지, 실제 집회를 진행하는 시간(아침 9시~오후 18시) 동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집회 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수막도 30일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와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표시·설치한 기간의 산정 기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제8조에서 ‘30일 이내’를 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현수막 등도 집회신고 기간 중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광고물이 실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11

■ 주용도가 2종류인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2015년)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B1, F1, F2) 및 의료시설(F3, F4, F5)로 기재되어 사용중인 건물에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 자목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 건축물이 단일 용도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상업목적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옥상은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公用部分)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하고 광고물의 설치가 도시미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간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12

■ 유치권 행사 현수막의 적용배제 가능 여부 (2016년)

특정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한 건물과 부지경계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6호에서 현수막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치권(留置權)의 필수적 요건인 점유의 수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과 시·도 조례에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적용배제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13

■ 지하차도가 지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년)

우리 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지하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도의 범위에 차량통행이 많은 지하차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지하도"는 교통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호가목 내지 타목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도로(고속국도, 터널, 고가도로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의 도로 중 "지하도로"에는 차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조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차도가 포함되지 않으며, 동 규칙 제11조에서는 지하공공보도시설내의 광고물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의 "지하도"는 지하보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차도를 "지하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14

■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적용 범위 (2016년)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 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장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Question 01

■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2015년)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3 제1항에서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청에서는 동법 제4조의 3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간판정비사업 시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Question 01

■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가능 여부 (2013년)

서울특별시 ○○구 소재 “공원주차장”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으로 보아 지하주차장 시설물 상부에 공공목적 광고물(LED전광판) 설치 가능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을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상업지역과 관광단지에만 설치가 가능토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이 동영상 LED전광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가로 6.3m, 세로 3.9m), 설치 장소 또한 상업지역이 아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중고층 주택 거주자들의 빛공해 뿐만 아니라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며, 귀 구가 청사 또는 건물이라고 하는 시설물도 지목상 ‘도로’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동 주차장 지상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치단체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 홍보용 간판 1개만을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로상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시설물 상부에 공공목적 광고물(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경관, 주민 생활환경 침해, 교통안전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2

■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6년)

1. 지자체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내에 홍보용 옥외광고물 1개를 설치할 경우 규격 제한이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1호에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는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에 대한 규격은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광고물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자체에서 청사 또는 건물 부지 내가 아닌 고속도로변에 야립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고속도로변의 공공용 야립 홍보판은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 규정의 폐지('07.12.21)로 지자체 홍보를 위한 야립 광고물 설치의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3. 공공목적 광고물을 설치하는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동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부지는 건축 시설물과 지반이 연속된 상태로 동 시설물의 부가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법령과 현장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또는 건물 부지의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03

■ 공공단체 건물에 대한 전광판 설치 가능 여부 (2016년)

공공단체 건물의 출입구 정면(캐노피)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1호에서는 동법 제6조제2항의 단서와 같이 공공단체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1개의 홍보용 간판(전광류 포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하다면 공공단체의 건물에 전광판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4

■ 주한 외국대사관 건물 벽면을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 설치 (2016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건물 외벽에 인도네시아 국가를 홍보하는 내용의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서는 외국공관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공공목적광고물도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Question 01

■ 심의위원회 권한의 범위 (2015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에 대한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광고물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운영기준에 근거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허가 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형량에 따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장 |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Question 01

■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2014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허가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에서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등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광고로 허가를 받은 광고물을 상업광고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동법 제13조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은 “시장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의3 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장등이 의무적으로 할 조치로서 계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시에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후 허가 취소를 하든지 등의 여부는 행정청이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용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만,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일지라도,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Question 02

■ 불법 현수막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2014년)

불법 현수막 등을 직접 설치하는 자(종업원 등)에게 고발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8조(벌칙)제1항제3호는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직접 설치하는 자도 고발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제1항제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의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의 ‘사업주’를 의미하며,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은 사업주인 개인이 고용한 피고용인들을 의미하므로 ‘개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또한 동법 제11조의 취지는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불법 현수막 등을 직접 설치한 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종업원(피고용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03

■ 분양광고주 및 분양대행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2015년)

아파트 분양 대행사가 광고주(건설사)에게 홍보 업무를 위탁받아 불법현수막을 표시·설치한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수범자(受範者)를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 1항에서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분양대행사 간의 위임계약에 따라 광고물 표시 행위에 이르게 되며 계약 당사자의 순차적인 공모와 협력이 없다면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광고주, 광고대행사 각자에게 과태료 부과 요건인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04

■ 불법현수막에 대한 조치 (2015년)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및 철거한 현수막의 경우 즉시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규정에 따라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관할청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05

■ 동일인에게 500만 원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2015년)

동일인이 여러 장소에 다수의 불법현수막을 표시·설치한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1호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의 불법광고물과 다수의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에 있어서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불법광고물의 설치 수량에 따라 위법성 및 가벌성이 비례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불법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에는 1개가 아닌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 장소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경우 비록 동일인이 설치한 것일지라도 장소별로 설치된 불법 광고물 수량을 기준으로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할 것입니다.

Question 06

■ 공공시설물 부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의 처리 (2016년)

공공시설물 부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처리해야 할 담당 기관의 결정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에서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한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부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의 경우 공유재산(公有財産)에 대한 점유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Question 01

■ 옥외광고업 등록 가능 여부 (2013년)

여러 회사 대표들이 각종 인·허가 관련 등록을 하여 사용중인 1개의 사무실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동 법「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 의한 <별표 6>의 시설기준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제한 없음)”이라고 규정하면서,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은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2항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동 법「시행령」제3조의4에 의한 <별표 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는 1개의 사무실에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동 사무실이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적합하고,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인 등록 가능여부는 관할청에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2

■ 옥외광고업 등록 가능 여부 관련 회신 (2015년)

타 지역(경기지역)에 공장 등록된 작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서울시 ○○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소재지로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자치구에 영업장을 두고 ○○구 오피스텔(업무시설)에 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타 지역의 영업장 임대계약서를 ○○구의 옥외광고업 등록 요건에 적합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규정한 취지는 무자격 사업자에 의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장 또는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건물의 임대계약서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관할청에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02

■ 옥외광고업 등록 가능 여부 관련 회신 (2015년)

타 자치구에 본인 자격증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고 ○○에는 기술능력이 있는 종업원(상시 근무자)을 고용하여 옥외광고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등록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03

■ 옥외광고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회신 (2015년)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지원하고 있는 ‘디자인 센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4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의 독립적인 사업자 인정 여부 (2016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도 옥외광고협회’와 ‘○○도 옥외광고협회 ○○시지부’가 모집 공고에 참여한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정책 *focus*

특집호

옥외광고 법령 해설집

발행인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김 현 (한국옥외광고센터 센터장)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제공하는 옥외광고 세상!

옥외광고 전문지식 전파를 위한 연구보고서, 통계자료집, 국내·외 정책 자료와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사인프론티어, 사이버캠퍼스, 간판개선시범사업 등
깊이 있고 유용한 옥외광고 자료들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국옥외광고센터
www.ooh.or.kr



사인프론티어
www.signfrontier.net



한국지방재정공제회
www.lofa.or.kr



사이버캠퍼스
edu.ooh.or.kr



간판개선시범사업
ipsign.ooh.or.kr





발행처 _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연구교육팀
발행일 _ 2016년 12월 16일
주 소 _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8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Tel_ 02)3274-2823 Fax_ 02)3274-2860 www.ooh.or.kr
디자인·제작 _ 애드원커뮤니케이션 02)2272-7571